

입법의견조사 2001-2

입법의견동향

(2001.3.11 ~ 2001.6.10)

2001. 7.

研究者 : 宋 永 仙(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입법의견 현황	9
헌 정	10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의견	
◎ 정치보복금지법(가칭) 제정의견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헌법 개정의견	
통일 · 외교	12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의견	
국 방	13
◎ 병역대체복무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병역법 개정의견	
◎ 한국전쟁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을위한통합특별법(가칭) 제정의견	
일반행정	15
◎ 국민고충처리위원회관련법 개정의견	
내무 · 지방행정	16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	
◎ 불법광고물 규제 · 단속 대폭강화	
◎ 소방법시행령 개정내용	
◎ 지방공기업법 개정의견	
◎ 지방자치법 개정의견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의견	

문화 · 관광 22

- ◎ 고도보존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 공연법 개정의견
- ◎ 문화재보호법 개정의견
-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시행규칙중 개정법률안
- ◎ 박물관기증확대관련 입법의견
- ◎ 위성방송관련법 개정의견
- ◎ 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
- ◎ 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의견
- ◎ 저작권법 개정의견
- ◎ 청소년 탈선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관련 의견
- ◎ 청소년보호법 개정의견
-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의견

교육 · 학술 32

- ◎ 교육관련법 개정안
- ◎ 사립학교법 개정의견
- ◎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의견
- ◎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 ◎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의견
- ◎ 학교폭력예방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의견

노동 37

- ◎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의견
-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관련 의견

재정 · 경제 38

- ◎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률(가칭) 제정의견

- 공인회계사법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공정거래신포등 제도도입 관련의견
- 관세사제도 개선
- 국세기본법 개정의견
- 금융감독체제 효율화 관련 입법의견
-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기금관리기본법·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기업구조조정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담배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견
- 보험업법 개정의견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의견
- 부동산세제 보유세 위주 개편관련 의견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 상속·증여세 과세관련 입법의견
- 선물업감독규정 개정안
- 세법 개정의견
- 소비자보호법시행령 개정의견
- 신용카드업관련법 개정의견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의견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개정안
- 외국기업인수 신고제도관련 의견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의견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견
- 증권투자신포법 등 통합관련 입법의견
-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관련 입법의견
- 통계법 개정의견
- 특별소비세 폐지관련 의견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의견

통상·산업 59

- 디지털 DB물 권리보호 추진관련 의견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의견
- ◎ 산업발전법 개정의견
-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
- ◎ 원자력법시행령 개정안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견
- ◎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특별조치법 개정의견
-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가칭) 제정의견
-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 개정의견

농림·해양 65

- ◎ 농지법 개정의견
- ◎ 축산법 등 개정의견

건설·교통 66

- ◎ 감리제도 개선관련 입법의견
-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
-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 건축물 설계·허가·용도변경 기준 강화관련 의견
- ◎ 건축법 개정의견
- ◎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견
- ◎ 공항주변지원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개정안
- ◎ 도시개발법 개정의견
- ◎ 상가임대차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안
- ◎ 예비면허제 도입관련 의견
- ◎ 자동차검사제도 개선관련 입법의견
- ◎ 자동차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견
- ◎ 재개발·재건축 관련법규의 정비

- ◎ 주거및도시환경정비법(가칭) 제정의견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의견
- ◎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의견
-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의견
-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 최저낙찰제 보완관련 입법의견
- ◎ 취약지구개발기준관련 개정의견
-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 피난계단 출입문 구조 관련법 개정의견
- ◎ 하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 항공기운항안전법 개정의견
- ◎ 항공법 개정의견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 82

- ◎ IT(정보기술)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관련 입법의견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환경 84

- ◎ 다이옥신규제관련 입법의견
-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의견
-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 야생동식물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 울릉도자연자원보존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개정의견

보건·복지 87

- ◎ 건강보험급여관련 법규 개정의견
- ◎ 건강보험재정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 공중화장실법(가칭) 제정의견

- ◎ 국민건강증진법 등 개정의견
-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 노령화사회 대비 입법의견
- ◎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체계의 개선
- ◎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관련 의견
- ◎ 의료법등 개정의견
- ◎ 장애우차별금지법(가칭) 제정의견

법원 · 법무 93

- ◎ 국적법 개정의견
- ◎ 돈세탁방지법관련 입법의견
- ◎ 민법 개정의견
-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 개정안
- ◎ 부동산 신탁사의 금전신탁 허용관련 입법의견
- ◎ 부패방지법(가칭) 제정의견
- ◎ 사법보좌관제도 도입관련 의견
- ◎ 사법시험법시행령 개정의견
- ◎ 소극적 안락사 합법화 논란
- ◎ 인간복제금지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의견
- ◎ 집단소송제관련 입법의견
-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 파산법 개정의견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 형사소송법 개정의견
- ◎ 형사소송법 · 검찰압수물사무규칙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개정의견

◎ 입법의견 현황(2001. 3. 11 ~ 2001. 6. 10)

입법의견조사 제2001-2호에서는 2001년 3월 11일부터 2001년 6월 10일 까지 두 달간 각종 언론매체, 학회세미나, 유관단체 토론회, 공청회, 정부부처 및 정당자료 등에 공표되거나 제기된 각계 각층의 입법의견 148건이 접수되었다. 그중 개정의견은 127건, 제정의견은 21건이다. 이하에서는 입법의견을 대한민국헌법령집의 분류체제를 참조하여 헌정, 통일·외교, 국방, 일반행정 등 16개분야로 나누고, 이를 제정의견과 개정의견으로 재분류하였는 바, 아래의 표와 같다.

최근입법의견현황

분 야	건 수	제정의견	개정의견
◎ 헌 정	4	1	3
◎ 통일·외교	1	·	1
◎ 국 방	3	2	1
◎ 일반행정	1	·	1
◎ 내무·지방행정	7	·	7
◎ 문화·관광	12	1	11
◎ 교육·학술	9	1	8
◎ 노 동	2	·	2
◎ 재정·경제	30	3	27
◎ 통상·산업	10	1	9
◎ 농림·해양	2	·	2
◎ 건설·교통	29	3	26
◎ 과학기술·정보통신	3	1	2
◎ 환 경	6	2	4
◎ 보건·복지	11	4	7
◎ 법원·법무	18	2	16
총 건 수	148	21	127

헌 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의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하고 시민 단체에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및 기관지.단체지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정당법의 개정의견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함. 개정의견에 따르면 △지역 감정의 악용을 막기 위해 선거일 1백80일 전부터 정당, 후보의 지지도 조사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시·도별, 유권자 출신지별, 씨족별 지지도를 공표하지 못하게 하고 △선거유세 때나 선거공보 혹은 홍보물에 후보와 가족, 정당대표의 원적지, 본적지, 출생지, 성장지역에 관한 사항을 발표·게재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를 금하기 위해 연간 법인세 3억원 이상을 내는 기업에 한해 납부세액의 1%를 의무적으로 정치자금으로 기탁하도록 하는 대신 기업이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원이 될 수 없게 하여 기탁금 외의 정치자금 기부를 엄격히 처벌키로 하고,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후보들이 명함을 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전화를 이용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함(중앙일보, 2001. 5. 9).

◎ 정치보복금지법(가칭) 제정의견

- 정권 교체의 과정에서 크든 작든 정치 보복이 있어 왔으며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는 바, ‘정치보복금지법(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 정치투쟁적 성격이 강한 게임의 규칙을 법의 영역으로 끌어안을 경우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라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한상희 건국대 교수).
- 정치 보복 행위를 규정하기가 어려우며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이용식 서울대 교수).

: 중앙일보, 2001. 5. 5.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한나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을 의석수와 총선 득표수만으로 산정하도록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교섭단체 위주의 현행 배분 방식은 총선민의를 어긋나므로 국고보조금 지급액의 50%는 총선 득표비율로, 나머지 50%는 의석수에 따라 지급토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박승국 한나라당 수석부총무).
- 현행 법은 교섭단체로 등록된 정당에 대해 전체 국고보조금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한 뒤 나머지 50%는 정당 의석비율(25%)과 총선에서의 정당 득표수 비율(25%)에 따라 배분토록 규정되어 있음(매일경제, 2001. 6. 3).

◎ 헌법 개정의견

- 현행 우리나라 헌법체계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간섭이 제도화 되어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정승훈 배재대 교수, ‘경제적 자유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방향’;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의 제도개혁 과제와 방향’).
- 국가 간섭제도는 △기존업자의 기득권 옹호 △특정 업계에 대한 옹호로 업계 전체의 발전저해 △경제외적 요인에 의한 간섭으로 경제효율 위축 △정부규제산업의 국제경쟁력 감퇴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바, 국가가 ‘해야 할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해 불필요한 간섭을 줄여야 하며, 특히 “경제적 자유 보장을 위해 ‘헌법’은 개정되어야 한다”며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재산권의 보장) △제33조 2항, 3항(공무원. 방산업 종사자의 근로3권) △제35조 3항(국가의 주택개발정책) △제46조 3항(국회의원 이권개입금지)△51조 1항(대통령 긴급재정경제 명령) 등이 개정되어야 할 구체적 조문임(매일경제, 2001. 5. 17).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기업활동규제실무위원회는 전체 고용인원의 3~8% 범위에서 국가유공자를 의무 고용토록 규정한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조항이 해당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고 업종별 특성과 기업 구조조정 상황을 적극 고려,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고용비율 하향조정 방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임(한겨레, 2001. 5. 25).
- 민간인 복과공직원들에게도 보상과 명예회복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개정하도록 함. 1960년이후 군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민간인 2,150명도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임(김성호 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2001. 6. 3).

국 방

◎ 병역대체복무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종교적 신앙이나 정치적 신념에 의해 징집이나 징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체복무제 입법이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고,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변론과 토론회 등을 통해 해결을 촉구하고 있음. 대체복무제는 사회봉사활동이나 공익근무요원 등을 통해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로서 독일의 경우 1961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200만명이 대체복무를 했으며,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인 대만에서도 2000년에 도입, 실시되고 있는 제도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한겨레, 2001. 5. 31).

◎ 병역법 개정의견

- 병무청은 병역비리 근절을 위해 병역면제자에 대해 신체검사 2심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병역법’ 개정작업을 진행중임.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각 지방병무청 신체검사장에서 병역 면제자를 판정한 뒤 군병원의 형식적 확인절차만 거치도록 되어 있는 현행 1심제를 폐지하고 신설될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심사를 거쳐 면제 여부를 최종 판정토록 하는 2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각 지방병무청에서 병역면제 대상인 5급(전시에만 비전투요원 근무), 6급(병역 완전면제) 진단을 받은 신검자에 대해 곧바로 면제판정을 내리지 않고 3~4개월후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최종심사를 거쳐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함(문화일보 2001. 5. 10).

◎ 한국전쟁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을위한통합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국회 연구단체인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과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2001년 5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통합특별법 공청회’를 열어 시안을 마련함.

<공청회 의견>

- △특별법의 목적은 진상조사와 희생자의 명예회복이며 법의 적용대상은

1948~53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학살 및 희생된 민간인들임. 단, 상당한 진상조사작업이 진행된 제주 4·3 사건은 대상에 들지 않음. △진상조사위원회는 대통령 산하기구로, 위원장은 장관급을 뒤야 함. △민간인학살사건은 군과 경찰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권이 부여돼야 함. △위원회는 3년간 진상조사 뒤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학살사건의 진상을 공표하여야 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위령공간 조성, 역사박물관 설립 등을 위한 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해야 함(장완익 변호사).

- △국회·시민단체 등이 지원하고 있으므로 1백만 유족들은 자신있게 나서 정부에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학살사건의 전모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며, 진상규명이 선행되면 명예회복은 물론 남한사회의 화해와 상생, 남북한의 화해와 상생도 도모할 수 있음. △민간인 학살은 남북의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만큼 좌·우익의 피해사례를 망라해 사건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며, 피학살자 및 유족의 배상 및 피해자에 대한 재심과 사면이 이뤄져야 함(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 국제군사재판소의 조례에 의하면 전쟁전 모든 민간인에 대한 살인·잔혹행위·노예적 혹사 등은 국가의 국내법 위반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김원웅 한나라당 의원).
- 진상규명이 있어야 제대로 된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그에 따른 법내용이 채워질수 있으나 진상규명 사실자체가 입법시안에 들어가 있어 법안이 졸속적으로 만들어질 위험이 있음. △4·3특별법 등을 고려, 졸속법안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미비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김순태 방송대 교수).
- △한국 현대사의 어둡고 참혹했던 시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은 굴곡진 현대사를 바로잡고, 우리사회를 인권의 기초, 민족의 화해와 통일이라는 기초 위에 내려놓는 작업이므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사회적 통합력·전문성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할 것임. △입법시안에는 '유족대표를 포함한 식견있는 사람'을 위원자격으로 규정했는데, 자격규정을 좀더 세분화해 적시해야 할 것임(황인성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경향신문, 2001. 5. 24).

일반행정

◎ 국민고충처리위원회관련법 개정의견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처리 권고사항의 약 15% 정도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바,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당분간 감사원 등과의 협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이 권고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만들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과 같은 권한을 갖기 위한 법 개정작업을 실시할 방침임(이원형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 경향신문, 2001. 3. 29.

내무 · 지방행정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인사제도 중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고 선진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①종전 보수, 복무 등의 분야에만 적용이 되어왔던 별정직 등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교육훈련, 제안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②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공무원의 전문능력을 기업활동에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휴직제를 도입하며, ③열린정부, 세계정부를 지향하도록 연구·교육·기술 등 특정분야에 한하여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④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동일한 자격의 다수인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채용시험의 공고 및 경쟁을 의무화하며, ⑤기타, 특수경력직 공무원(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등)의 직종별 개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부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함. ⑥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하여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 중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경우에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⑦공공개혁의 성공적 수행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을 별정직·고용직공무원까지 확대하도록 함(행정자치부 인사과 보도자료, 2001. 3. 27).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

- 앞으로 문화·예술단체도 기부금을 모금할 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들 단체가 기부금을 모금하려면 해당 시·도의 허가를 받고 모금내역과 사용처를 사후 보고해야 하는 등 모금절차가 크게 까다로워질 예정이며, 문예진흥기금 역시 지역문화·축제행사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며 문예진흥기금에 기부하는 사람이 용도를 지정하지 못하

도록 할 방침임(경향신문, 2001. 3. 23; 조선일보, 2001. 4. 3).

◎ 불법광고물 규제·단속 대폭강화

- 서울시는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을 세우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함. 불법광고물에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를 대폭인상하고 철거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크게 강화할 예정임.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중점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조례개정작업을 거쳐 시행할 방침임. 이에 따르면 우선 주택가에 배포되는 불법 전단과 청소년 유해광고물,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의 벌금이 현행 500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과태료는 50만원이하에서 300만원이하로 대폭 상향조정되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후에도 업주가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1회 500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1년에 최고 2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예고없이 즉시 수거해 폐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옥외광고물은 허가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허가 후 6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토록 하고 있음. 이밖에 추가 법개정 작업을 통해 전광판이나 옥상광고물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간판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고, 광고업자의 자질을 향상시켜 우수광고 제작을 유도하기 위해 옥외광고업 개설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며, 개설요건도 강화할 예정임(경향신문, 2001. 6. 6).

◎ 소방법시행령 개정내용

- '99. 6. 30 경기 화성 씨랜드 화재와, '99. 10. 30 인천 호프집 및 2000. 2. 18 여의도 지하공동구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개정 공포된 소방법의 후속조치로 청소년 등이 이용하는 PC방등 신종 다중이용업소와 불이 나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화재발생시 사회전반에 걸친 국민적 손실은 물론 국제적으로 국가경제 및 신용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공동구에 대한 소방안전의 확보를 위해 규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방법시행령이 의결된 바, 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호프집 등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영업으로서 지상층에 설치된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PC방을 다중이용업의 범위에 추가하여 비상탈출구 확보, 비상벨 설치 등 소방·방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중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초기자동소화용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해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 시설관리 등을 위해 방화관리자의 선임을 의무화함. ②중전 건축시 소방시설완공검사를 민간감리업자의 감리결과보고로 갈음하였으나, 앞으로는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청소년·노유자시설 및 단란·유흥주점 등 다중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후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의 강화를 위해 완공검사의 절차를 개선함. ③청소년시설 등은 중전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화재경보설비를 설치토록 하던 것을 연면적 4백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시설은 화재경보설비를 설치토록 하였고, ④화재시 스스로 대처할 능력이 적은 청소년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은 중전에 지하층 또는 4층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던 것을 연면적 6백제곱미터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기준을 대폭 강화함. ⑤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공동구의 경우도 화재발생시 화재확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구간별로 방호벽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특히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동구의 경우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한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것은 물론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함. ⑥중전 소방시설완공검사를 민간감리업자의 감리결과 보고로 갈음하였으나 옥내

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청소년·노유자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후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완공검사 절차를 개선하였고, ⑦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은 종전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화재경보설비를 설치토록 하던 것을 연면적 4백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은 화재경보설비를 설치토록 기준을 대폭 강화함(행정자치부 예방과, 2001. 3. 13).

◎ 지방공기업법 개정의견

<행정자치부의 입장>

-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의 부실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장 선임권을 제한하고 경영감시 권한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이 개정안은 현행 ‘지방공기업법상’ 경영평가 기준 및 평가기관 선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고 평가실시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자치단체장이 함께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던 것을 평가실시까지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행정자치부는 이 법개정의 취지에 대해 자치단체들이 공기업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공기업 부실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무능한 사장이 낙하산식으로 임명돼 공기업 부실이 가속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지방공기업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일률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 자치단체들은 행정자치부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장임명권이 제한받고 경영평가권도 잃어 자치단체 소유인 지방공기업에 대해 사실상 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된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자치부의 법개정 추진을 반대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는 기획을 하고 자치단체가 집행업무를 맡아야 하는데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기본 방향을 무시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의 설립자인 자치단체에 권한을 주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권한 자체를 박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함
 : 경향신문, 중앙일보, 2001. 5. 29.

◎ 지방자치법 개정의견

- 자치단체장의 경우, 현재 연속 3선까지 허용되고 있지만 4년씩 3번을 하면 장기 재임에 따른 부작용이 많은 바, 정부와 여당은 자치단체장의 연속 재임을 두번으로 제한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함. 그러나 2002년에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2002년부터 3기연임을 금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따라서 오는 2006년 선거때부터 3기연임 금지제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임.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현안을 결정하기 위해 주민투표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하고 주민투표에 붙일 사안, 주민투표의 절차 및 효력, 요건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 부단체장을 국가 임명직으로 하는 방안은 지방자치제도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단체장이 지방의회 등의 승인을 받아 부단체장을 임명하도록 행정집행 사무에 있어 부단체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부단체장의 책임을 예산집행, 물품 구입 및 계약, 인허가 사무 등의 분야에서 강화함으로써 부단체장의 법적지위를 한단계 더 높이기로 함. 당정은 이와 함께 지방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 문제와 관련, 도시의 기초의회를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광역시의 구의회는 인구 8만 이내는 의원 8명, 인구 8만~10만명인 자치구의 경우 의원 10명 등 인구 규모별로 분류해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경향신문, 2001. 4. 27).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헌법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토록 하고 있어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이 행해질 가능성이 큰 바, 이를 막기 위해 신고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경찰이 집회의 허가권까지 가지고 있으므로 집회 허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그만큼 집회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사후 처벌조항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회에 대한 사전통제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의 일부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으므로 법을 개정하여 이에 대비한 규정도 신설해야 함(김도형 민변소속 변호사, 경향신문, 2001. 4. 16).

문화 · 관광

◎ 고도보존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경주시에 따르면 시 전체 면적의 2.6%인 34km²가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이로 인해 해당 주민들이 건축물 신·증축 등 각종 개발행위에 큰 제한을 받아 재산권 침해 시비가 급증하고 있는 바, 문화재 보존과 발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일체의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재산권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이 문화재 보존을 기피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도보존특별법(가칭)’의 제정을 주장함. 이 특별법은 매장 문화재 부지로 지정돼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를 국가가 시가로 매입하고 발굴비용도 국고부담으로 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경향신문, 2001. 4. 7).

◎ 공연법 개정의견

- 공연장업자의 개념을 공연장 운영일수에 관계없이 운영형태에 따라 새롭게 정의하고, 문화관련법령상 청소년의 범위 등을 통일하기 위하여 연소자의 명칭을 청소년으로 하되 그 범위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하며, 공연산업 육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에 공연기획자·공연콘텐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객석 500석이상 공공공연장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소지자 의무배치기한을 지방 공공공연장의 실정을 감안하여 3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음. ①중전에 연 90일이상 또는 계속해서 30일 공연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공연장업자로 정의하던 것을 운영일수에 관계없이 대관료 또는 입장료를 받고 공연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로 정의하여 공연장업 등록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②문화관련법령상 청소년의 범위 등을 통일하기 위하여 연소자(年少者)의 명칭을 청소년(靑少年)으로 하되 그 범위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를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공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이 매년 수립·시행하는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에 공연예술의 해외진출, 공연기획자 및 공연콘텐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③종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문화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연장업 등록 수수료를 받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문화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자체 조례에 의하여 공연장업 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9조제3호). ④객석 500석이상인 공공공연장은 2002년 1월 1일부터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 공공공연장의 실정을 감안하여 그 시행시기를 3년 연장하고자 함(안 부칙 제1조)(문화관광부 공보실 보도자료).

◎ 문화재보호법 개정의견

- 불교 조계종은 도난 및 훼손, 밀매가 급증하고 있는 사찰문화재 실태에 대한 정부 당국과의 공동조사 제안 등을 뼈대로 한 ‘사찰문화재 보존과 도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최근 발표하고 사찰예산 배정의 최우선 순위를 문화재 보존에 두는 것을 비롯하여 정부 당국과의 사찰(1828곳) 문화재 일제조사, 문화재 도굴범의 공소시효 연장(현행 5년) 등 ‘문화재 보호법’ 개정 요청, 사찰 박물관의 활성화, 사찰 도난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와 정부 지원 요청, 문화재 전담 수사기구의 설치 요청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문화일보 2001. 5. 19).

◎ 문화재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중 개정법률안

- 문화재 수리공사에 있어서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문화재 수리공사의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전통문화의 전승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제도를 도입하며, 근대문화유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등록문화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2001. 3. 28)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시행령개정령>

- ①문화재수리용역 및 시공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대상, 평가기관, 평가사항, 평가기한 등을 정하고, 문화재수리공사 현장점검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보완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는 등 처리지침을 정하여 △평가대상: 수리공사는 10억원이상, 용역사업은 3천만원이상, △평가기관: 문화재기술위원회(문화재청 및 시·도에 설치), △평가사항: 용역 및 시공결과, 해당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한: 준공 다음연도 3월말로 하고, ②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함. ③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가 전수교육활동에 정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수교육보조자’ 명칭을 ‘전수교육조교’로 변경하고, ④문화재수리기술자 종류의 하나인 실측·설계기술자의 담당업무중에서 박제 및 표본기술자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실측·설계업무를 제외함. ⑤매장문화재 발굴비 국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 단독주택과 농어민 및 영세업자의 소규모 사업시설의 건축에 따른 발굴에 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비를 지원하던 것을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용 공동주택, 소규모 중소기업시설의 건축 및 보존이 결정되어 사업시행을 할 수 없게 된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비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함. ⑥문화재청장의 권한중 △명승·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안에서의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구역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중에서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행위, △공개중인 국가지정문화재의 촬영에 관한 사항, △천연기념물의 사유·표본·박제 및 폐사체 처리행위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행위의 허가,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발견문화재의 경찰서장 통지에 관한 사항, △자연공원구역내 문화재 변경허가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및 통지 등과 같이 일상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정형화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함. ⑦사업면적 3만㎡미만의 건설공사중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매장문화재 포장지의 인정기준을 문화관광부령으로 구

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사업면적이 3만㎡미만의 건설공사중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매장문화재 포장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던 것을 문화재 관리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문화관광부령에 매장문화재 포장지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개정령>

- ①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의 인정기준·절차·관련서식을 정하여 △인정기준: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중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에 공적이 있는 자로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자, △인정절차:전문가 조사 → 인정예고 → 문화재위원회 심의 → 인정·고시하고, ②문화재수리용역 및 시공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관의 구성·운영, 평가서식, 우수업자의 지정요건·절차·유효기간 등 세부사항을 정함. ③평가기관인 문화재기술위원회는 발주청의 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6인과 관계공무원 1인으로 구성하고, ④우수업자의 지정요건으로는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 및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최근 10년간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평가점수가 전체평가대상의 상위 20% 이내인 자 등으로 하고, 지정절차는 사업평가 → 사업자 능력평가 → 우수업자 지정의 순으로 하며,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함. ⑤등록문화재제도의 도입에 따른 등록기준·절차, 현상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지정되지 않은 건조물·시설물 중에서 50년 이상이 경과되고 역사적·학술적·예술적·건축사적인 면에서 가치가 있는 것(50년 미만의 것이라도 상기의 가치가 있으며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록 가능)을 문화재 지정절차에 준용하여 지정하고, 문화재 외관의 1/4이상을 변경하거나 당해 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현상변경을 신고 함. ⑥3만㎡미만의 건설공사중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매장문화재 포장지의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매장문화재 포장지 인정기준으로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문헌 등에 의하여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고도(古都) 및 지형여건상 매장문화재의 포장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으로 함. ⑦문화재수리업종별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보유기준 일시미달을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망·국외이민 및 신체·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는 등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한함.

: 문화재청 입법예고안, 2000. 5. 7.

◎ 박물관기증확대관련 입법의견

- 최근 일부 개인 소장가들이 국립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해 화제가 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외국사례에 비춰 볼 때 박물관에 대한 한국사회의 기증문화와 이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기울이는 노력은 매우 빈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기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외국처럼 주요 박물관에는 기증을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기증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더 넓혀 나가야 함(이보아 숙명여대 교수).
- 국가기관과 단체들이 일반인들의 기부금을 받을 수 없게끔 돼 있는 현행 법규를 손질해 국립박물관 등에 한해서는 일반인들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기증유물의 경우 한국감정협회의 감정을 거쳐야만 그 평가액만큼을 기증자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주도록 한 규정 등을 개정해야 박물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유물기증 문화가 자리잡을 것임(중앙일보, 2001. 3. 23).

◎ 위성방송관련법 개정의견

- 2001년 말부터 실시될 디지털 위성방송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됨. 위성방송 채널 중 교육·보도·교양 채널은 일정 부분 폐쇄자막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성방송 수신기에 폐쇄자막수신 기능을 내장하며 이를 위해 해당 법률을 보완해야 할 것임(한국농아인협회, 전자신문, 2001. 4. 13).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

- 비디오물과 게임물 등의 성인등급 이용연령을 18세 이상 대학생 및 근로자로 하고 청소년게임장을 신고업종으로 남아있도록 하는 내용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안을 처리함. 개정안은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성인등급 비디오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국회 문화관광위, 경향신문 2001. 4. 17).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견

- 문화관광부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할 방침임. 이에 따르면 문구점, 편의점, 쇼핑센터, 당구장, 다방,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1개 업소당 2대 이하의 전체 이용가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할 수 있는 ‘싱글로케이션’ 규정이 신설되어 전자오락실이나 PC방뿐 아니라 유흥시설, 생활편의시설은 물론 동네 곳곳에 위치한 문구점, 다방 등에서도 게임기 설치가 가능해 생활 곳곳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할 예정임. 일반 게임장의 경우 성인용 게임(18세 이용가)을 60% 이내로 설치토록 새로 규정했으며 다만 관광호텔이나 유원시설업내의 일반 게임장의 경우 성인용 게임을 전체의 8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특히 그동안 업계의 관행처럼 굳어진 무자료 거래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을 개정, 게임 제공업자는 게임 기구 및 경품 매입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존하도록 규정함. 이 밖에도 △멀티미디어 문화 콘텐츠 설비 제공업자(일명 PC방)는 영업장내에 개별 PC별로 높이 1.3m 이상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등이 연 3시간 이내의 유통업자 교육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음(전자신문, 2001. 6. 1).

◎ 저작권법 개정의견

- 문화관광부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을 활성화하고 인터넷에서의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1년 상반기 안에 저작권법을 대폭 개정하기로

함. ‘저작권법’ 개정시안은 디지털 콘텐츠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와 편집물의 제작·관리에 상당한 투자를 한 사람에게 5년간 복제 배포 및 전송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이같은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복제 방지를 위해 설치된 암호장치를 영업 목적으로 무력화할 경우 저작권 소유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 하도록 할 방침임(동아일보, 2001. 3. 30).

<저작권법 개정안>

◇ 편집물제작자 보호 규정 신설

- 인터넷의 생활화 등 지식정보사회의 급진전으로 디지털콘텐츠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저작권법’은 편집물 보호로 인한 정보독점 가능성을 우려 창작성 부문만 보호하고 있어서 디지털콘텐츠 등 편집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며, 출판·음반·영상물 등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는 현행 저작권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바,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DB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편집물의 제작이나 유지관리를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공정한 이용을 위해 폭넓은 제한 규정을 신설함. 편집물의 등록·법정허락 등의 경우 저작물 관련규정을 준용함.

◇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보호 규정 신설

- 인터넷의 보편화로 음악·영화 등 저작물 이용이 매우 간편해졌으나 무단복제의 용이·균질성 및 복제물 전파의 신속·광범위 등 디지털 환경의 권리보호 취약성으로 저작물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이 위축되고, 인터넷상의 디지털콘텐츠 무단복제 방지장치와 권리처리를 위한 정보 등 저작권 보호기술이 개발·이용되고 있으나 이의 무력화를 위한 기술도 같은 속도로 발달하고 있어 이를 방지시 사이버공간에서의 저작권 보호 형해화가 우려되는 바,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술조치 무력화 기술제공 등을 금지하고 권리관리정보 제거·변경 등을 저작권침해행위로 의제, 위반시 형사처벌규정을 신설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 신설

-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불법복제나 전송이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접근을 위한 설비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저작권자간의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설비나 서비스를 통한 제3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인터넷상에서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제3자의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침해사실 고지에 의한 중단절차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 규정을 마련함.

◇ 영상저작물 특례규정 보완

- 영상저작물의 인터넷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의 영상제작자의 영상저작물의 이용권리의 범위에 전송이 포함되지 않고 있는 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영상제작자의 권리 성격 및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영상저작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함. 이를 위하여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용·방송용·전송용으로 구분하고,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을 권리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문화관광부, 저작권법개정 공청회, 2001. 4. 12.

◎ 청소년 탈선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관련 의견

- 검찰은 '잘못된 청소년문화'를 바로 잡을 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거저 주는 일반인에게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성매매 청소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토록 하는 등 관련법을 대폭손질하기로 함.

<검찰의 입장>

◇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권하는 경우에도 처벌

- 검찰은 '청소년에 대해 술·담배를 판매한 자'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현행 '청소년보호법'으로는 잘못된 청소년들의 음주·흡연문화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보고 이러한 방안을 마련함. 2001년 5월의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교생의 흡연율은 남학생이 27.6%, 여학생이

10.7%로 아시아 국가 중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0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남자 중학생의 18.5%, 여학생의 30.7%가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술·담배의 위해성이 위험수위까지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매매 청소년 형사처벌

- 최근 급속히 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방안이 마련됨. 검찰은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원조교제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으며, 실제로 수많은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는 청소년이 있고, 남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외에는 △단순 기소유예 △선도유예 △보호관찰부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불가능해 청소년 선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청소년 이성혼숙 업주 처벌강화

- 현행 '청소년보호법'도 '청소년의 이성혼숙'에 대해 금하고 있기는 하나 최근 서울 행정법원이 이에 대한 엇갈린 판결을 선고해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73.3%가 숙박업소인 점을 중시한 검찰은 법조문을 명확히 함으로써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기로 함.

◇ 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검찰항고권 보장

- 현행법에는 소년보호사건의 법원 판결에 대한 항고권을 소년 자신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원 판결을 검찰이 부당하다고 판단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 있음. 검찰은 소년범을 수사·기소까지 한 검찰에게 항고권이 주어지지 않음으로써 소년범에 대한 적정한 교화과정에서 검찰이 배제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소년범에 대한 올바른 사회화를 위해서라도 검찰의 항고권을 보장하도록 할 방침임.

<반대의견>

- 여성단체는 술·담배 무상제공, 숙박업주에 대한 처벌강화 등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성매매 청소년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음. 검찰이 극히 일부 청소년들의 직업적인 윤락행위를 확대 해석하여 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으며, 이들을 처벌하기에 앞서 이들이 성매매에 빠져들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경향신문, 2001. 6. 7).

◎ 청소년보호법 개정의견

-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 부장검사)는 무료사이트의 경우 유료사이트 보다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한데도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인터넷 청소년 유해사이트들 중 무료사이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줄 것을 정보통신부에 건의하기로 함. 검찰은 이와함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대상을 단속에서 적발된 개별 사이트가 아닌 음란, 자살사이트 등과 같이 포괄적인 범위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한국일보, 2001. 4. 26).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서울지방검찰청 소년부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사실상의 윤락행위를 한 청소년에게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적용, 형사처벌하는 대신 보호처분토록 하고있어 청소년들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바, 원조교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원조교제 청소년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원조교제 청소년을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청소년의성보호법’ 제13조 1항을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함. 검찰은 이밖에도 ‘청소년보호법’ 등 청소년 관련 규정이 애매한 일부 법조항의 개정을 제안하는 의견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임(경향신문, 2001. 5. 10).

교육 · 학술

◎ 교육관련법 개정안

- 교육관련법 개정안은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학교운영위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며, 사립학교 교수회와 교사회를 공식기구로 설치하되 역할과 운영방법은 자체 정관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임시이사회가 파송된 후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때는 이사의 3분의 1을 교수회와 교사회 학교운영위가 추천토록 했으며, 비리 관련 이사는 5년간 재선임될 수 없도록 하고,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비리 임원의 이사회 재진입을 막는 3단계 장치를 두고 있음(민주당, 동아일보, 2001. 4. 16)

◎ 사립학교법 개정의견

- 사학분규 원인인 재단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익이사제 도입 △학교 재정 투명화 장치 마련 △교수협의회, 학생회, 직원노조의 학교 운영 참여 등을 보장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있어야 함(학교 민주화쟁취 사학연대, 경향신문, 2001. 4. 6).
- '사립학교법' 등 사학 관련 3개법 개정안은 사학법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적 학교교육을 부정하는 악법인 바, 철회를 요구함. 특히 일부 비리사학 문제를 침소봉대해 인사·재정·감사·규칙제정·임원선임 등의 권한을 사실상 교사와 교수에게 넘겨주려 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교사와 교수들이 학교 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게 돼 교육현장의 분열이 심화될 것임(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 교육관련 18개 단체, 경향신문, 2001. 4. 24).
- 국내 외국인학교의 고졸학력 인정여부가 문제가 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르면 2001년 하반기부터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졸업할 때 국내 일반고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고졸학력을 인정해주기로 함. 현행 법규상으로는 외국인학교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가칭)'을 제정

해 이르면 2001년 하반기부터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 고졸학력을 인정할 방침이며,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으로, 2001년 하반기 관련 규정이 발효된 이후 입학한 학생에 한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현재 재학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 예정임(조선일보, 2001. 5. 16; 중앙일보, 2001. 5. 17)

◎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의견

- 교육부는 지난 99년 12월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은 ‘초중고 재학중 영재판별 기준에 의해 영재로 판정받은 사람을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부모는 시도교육감에게 영재학교나 학급에 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한번 ‘영재’로 판정을 받으면 언제든지 영재학교, 학급 진학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재 판정을 받은 이후 여러가지 이유로 영재성이 떨어지거나 영재교육기관별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은 ‘비영재’를 걸러낼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재집단에 퇴출이 없이 진입만 가능한 것으로 학급의 질적인 관리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급이 영재성이 떨어진 영재의 입학을 거부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쇄도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영재교육진흥법’을 일부 개정, 영재 판별권을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부여해 언제든지 영재성이 떨어지는 학생을 퇴출시키고 영재교육기관별프로그램 차이에 따라 적합한 학생을 탄력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임. 영재 판별권을 갖는 영재교육기관은 △전일제 영재학교, △상설 또는 비상설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일반 학교, △방과 후 중심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영재교육원 등이 될 전망이다 (정기오 교육부 인적자원정책국장, 경향신문, 2001. 5. 7; 중앙일보, 2001. 5. 8).

◎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학의 등록금 책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2001년 2학기부터 사립대학이 등록금(수업료+입학금)을

결정할 때 학부모·학생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 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총장 또는 학과장이 학교 실정에 따라 결정하기로 되어있던 사립대학(산업대·전문대·방송통신대·기술대 포함)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부모 및 학생대표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학교 실정을 고려해 총장 또는 학장이 정하도록 하였음. 이에 대하여 사립대학 측은 정부가 국립대와 달리 재정을 보조해 주지도 않는 사립대학의 등록금 책정에 대해 간섭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협의를 거치게 할 경우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재정난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음(조선일보, 2001. 4. 11).

◎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 개정의견

- 앞으로 서울·부산 등 대도시 지역에서 5층 이상 ‘빌딩형 학교’ 건립이 허용되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시·도 교육감(장)이 요청한 학교용지 관련 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했는지를 확인조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을 2001년 상반기에 개정할 예정임. 개선방안에 따르면 학교 용지 부족과 과밀 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대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 신·증설 때 운동장 없이 고층 건물에 수영장 등 실내 체육 시설을 갖춘 ‘빌딩형 학교’와 12~18학급 규모의 ‘소규모 학교’ 건축을 확대키로 하고, 1개 부지에 학교급이 다른 2개 학교가 들어서는 ‘단지형 학교’와 공공기관 또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사회체육시설과 학교 건물을 복합화한 ‘복합형 학교’ 건축도 늘릴 계획임(문화일보 2001. 4. 14).

◎ 학교폭력예방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늘어나는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학생 부모에게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하는 등 책임을 묻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학교폭력예방에관한특별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임. 학교폭력을 근절하기에는 현행법의 구조와 관행에 미비점이 많으며 학부모의 협조와 교사의 적극 중재노력을 유도할 방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측은 학교폭력이나 학

부모에 대한 문책은 기존의 법을 적용하거나 개정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다며 특별법 제정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단기적 요법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음(교육인적자원부, 동아일보, 2001. 3. 23).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 3월 국회에서 의결된 개인 과외교습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개정됨에 따라 교습자가 신고할 내용과 신고 절차를 담은 이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임. 교육부 시행령 안에 따르면 개인과외 교습자는 2001년 7월 8일부터 한달 내에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교습자 인적사항 △월 교습료 △교습과목을 신고해야 하며, 교습장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시행령은 교습자의 월 소득과 함께 소득 변경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신고된 소득은 지역교육청에서 세무당국으로 자동 통보돼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될 예정이며, 만일 소득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초 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3단계 처벌에 따라 △1차 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습을 계속하다 2차 적발되면 교습중지명령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벌금 △3차 적발되면 1년 이하 금고형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함(조선일보, 한국일보, 2001. 4. 23).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2001년부터 처음으로 국가공인을 받게 됨에 따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민간자격을 국가자격과 동등하게 취급해 대학입시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주고 학점은행제에서의 학점인정도 해줄 방침임. 이에 따라 공인유효기간내에 이들 28개 민간자격을 탄 사람들에게 앞으로 대학입시에서 대학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할 예정임.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민간이 운영하는 자격 중 일부를 국가가 공인, 공신력과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로 지난 2000년 최종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은 △재정경제부 소관의 신용분석사, 대출심사역, 국제금융역 △교육부 소관의 한자능력급수 △산업자원부 소

관의 산업기계정비사, 사출금형제작사, 프레스금형제작사, 전기계측제어사, 무역영어 △정보통신부 소관의 E-TEST, 정보시스템감리사, PC활용능력평가지험(PCT), 인터넷정보검색사 △노동부 소관의 기계전자제어사, 치공구제작사, CNC기계절삭가공사, 기계설계제도사, 기계 및 시스템제어사, 공작기계절삭가공사, 자동화설비제어사, 산업전자기기제작사, 컴퓨터운용사, 가구설계제도사, 회계정보(처리)사, 문서실무사, 펜글씨검정 △산림청 소관의 수목보호 기술자격 △조달청 소관 구매. 자재관리사 등 모두 28개에 이름(교육인적자원부, 경향신문, 2001. 4. 2).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견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 하반기부터 판소리, 탈춤, 궁중음식 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문하생 가운데 고졸이상인 사람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학력 및 학점을 인정하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함. 현재 문화재청에 등록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193명과 문하생 등 2200여명 가운데 고졸이상은 1600여명이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희망하면 곧바로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고 문하생들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학점은행제 운영실에 학습자 등록을 하고 일정 과목을 이수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임(동아일보, 2001. 5. 4).

노동

◎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의견

-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등 여 3당이 2001년 4월 24일 여 3당 총무·정책위의장 회담에서 2년간 유보하기로 했던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토록 함.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생리휴가를 현행(매월 하루)대로 유지하게 되었으나 개정안 중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안에 없는 내용인 태아검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가족간호 휴직은 재계가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외되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생활비 보조 조항도 삭제될 예정임(동아일보 2001. 5. 9).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관련 의견

-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 조례와 규칙 등을 대상으로 남녀차별 자치법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여건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는 등 전라남도과 일선 시·군의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 상당수에 남녀차별이나 불평등 조항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사례를 보면 전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경우 신규 임용시험 성적이 같을 경우 병역을 마친 사람을 우선 뽑도록 해 여성과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으며, 또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경우 당연직 위원에 도청실. 국장 이상 간부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으나 여성업무를 총괄하는 복지여성국장만 제외돼 여성 기업인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 시·군의 경우 영암군은 인재육성기금을 특별한 이유없이 남고에 40%, 여고에 20% 배분하도록 했으며 해남군은 사회복지분야 별정직공무원을 여성으로 임용토록 규정해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위배하고 있고, 이밖에 자치회 회원을 가구주로 한정, 가구주가 아닌 여성의 참여를 배제(함평군)했으며 민원담당 공무원을 가급적 여직원으로 배치하도록 한 규정(목포시)은 여성공무원의 평가절하와 주요부서 근무를 제한하는 자치법규로 지적됨.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조사된 불평등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2001년 6월말까지 개정을 추진, 공식사회의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폭을 확대할 계획임(경향신문, 2001. 4. 26).

◎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률(가칭) 제정의견

- 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는 가맹사업은 사업 경험 없이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직자나 퇴직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사업방식인데 최근 조사 결과 가맹본부의 횡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법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대해 저지르고 있는 불공정 행위를 막고 가맹점 모집 과정의 투명성과 거래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률(가칭)’을 제정하기로 함. 현재 논의되는 법률안 내용으로는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모집행위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전 필요한 정보의 사전 제공을 의무화하고, △정보를 속인 본부는 가맹금 등을 반환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공정거래법에 나와 있는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을 가맹 사업에 맞게 구체화하고, △가맹점이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밟을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단체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 지도사를 설치해 가맹사업 거래와 분쟁에 관한 자문·상담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등이 검토되고 있음(중앙일보, 2001. 5. 12; 조선일보, 2001. 5. 14).
- 현재 우리나라 가맹사업에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가맹사업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는 것으로, 이는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필요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과장된 광고를 하기 때문인바, 가맹점모집시 필요한 사업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가맹사업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가맹점 모집과정에서부터 거래종료단계까지의 거래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법제의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가칭)’을 마련하고자 하는 바, 다음을 그 내용으로 함. 가맹사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성공적인 사업구상과 계속적

인 품질 및 판매기법의 개발, 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경영 지원 등을 규정하고, 가맹점에게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에 필요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 준수와 이를 위한 협조, 가맹계약서상의 권리의 무단 양도 및 영업기술의 공개 금지 등을 규정함. 가맹사업 전체에 대한 신뢰감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의 각종 부담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시 가맹금 등을 반환하는 의무와 계약서 등 관련문서를 사전에 교부하도록 의무화함.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범위를 벗어난 각종 불공정한 가맹사업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상품·용역의 공급 및 영업지원의 거절, 상품 및 용역가격의 구속, 거래상대방 및 거래지역 등의 구속, 가맹점에 대한 불이익제공 등을 금지하고, 가맹사업 업계의 자율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자율규약의 근거를 규정함(한국프랜차이즈협회·대한상공회의소,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01. 5. 25.).

◎ 공인회계사법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재정경제부는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에 대한 보수로 해당 기업의 주식,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가 지분을 소유한 기업을 감사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공인회계사법’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 이에 따르면 현재는 지분 1% 이상을 소유한 기업을 감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공인회계사는 앞으로 지분 0.01%(또는 취득원가 기준 3천만원)이상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되며, 현재는 주식 등을 감사보수로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나 4월 중순부터는 이의 금지가 명문화되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적립금액을 현행 연간 감사보수 총액의 3%에서 4%로 늘리며, 적립금 한도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수 평균의 15%에서 20%로 확대하며, 외부감사를 하기 위해 구성된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보험한도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가될 예정임(재정경제부, 경향신문, 조선일보, 2001. 3. 19).

◎ 공정거래신호등 제도도입 관련의견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른바 ‘공정거래신호등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공정거래신호등 제도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특정 사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공정거래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미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일종의 사전상담 성격으로 미국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시행되고 있음.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 사업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에 따른 비용 부담도 덜 수 있게 됨. 공정거래신호등 제도가 도입되면 공정위는 기업이 의뢰한 특정 사업활동의 법률 위반 여부를 해석, 통보하고 기업은 이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됨. 특히 최근 IT(정보기술) 혁명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영역과 새로운 방식의 기업활동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신호등 제도는 법집행당국이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신속하게 내려줌으로써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현행 민원제도로는 공정위가 민원을 접수한 뒤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고 자료도 기업이 제공한 것 이외에 추가로 요구할 수 없어 사실상 해당법률 조문을 열거한 수준의 답신밖에는 줄 수 없게 되어 있으나 공정거래신호등 제도가 도입되면 공정위는 민원제도보다는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추가자료도 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됨. 반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활동에 대한 법 집행에도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용대상이 포괄적이고 아직 실행되지 않은 사업행위까지 업무영역으로 삼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부담이 너무 과중해질 것이란 지적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제도에 의해 회신하는 답변서가 자칫 공정위의 법 집행과 정책운용을 구속하는 결과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공정거래연구소 연구팀은 공정거래 신호등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적용대상의 범위확정,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유료화 방안, △기업 정보 누출 방지대책, △제도 운영 책임자 임명 여부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경향신문, 2001. 6. 6).

◎ 관세사제도 개선

- 관세청은 일정 기간 이상 관세분야에서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 관세사 자격을 주던 ‘특혜’를 2001년 4월부터 없애기로 함. 다만 오랫동안 관세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는 전문성을 인정해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내국소비세법 △무역실무 등 2차 시험 4과목 가운데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등 2과목을 면제해 주기로 함 (동아일보, 2001. 3. 27).

◎ 국세기본법 개정의견

- 최근 논란이 되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비롯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무조사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피과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세청이 조사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을 추진하기로 함. 특위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거나 관련 법규상 명백한 위법이 있다는 확증이 있을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한나라당 경제대책특별위원회, 경향신문, 2001. 5. 15).

<국세기본법개정안>

- 세무조사 결과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세무당국의 부당한 세무조사와 그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국회차원에서 조사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납세자가 동의할 경우 국세청은 국회의 자료요청에 응하여야 함(김영춘 한나라당 의원, 경향신문, 조선일보, 2001. 6. 1).

◎ 금융감독체제 효율화 관련 입법의견

- 재정경제부는 2000년 말 기획예산처 주도로 마련된 금융감독 관련법 4개 시안 중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조직운영 시스템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일부 기능을 개편키로 하고 관련 법규들이 개정되는 대로 이르면 2001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임. 이에 따라 △감독규정 제·개정, 인·허가 기준 검토 등 금융감독위원회의 정책기능이 강화되고 △금융감독위원

회의 증권·선물시장 관리·감독과 감시 업무가 증권선물위원회로 대폭 넘어가며, △적기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간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일정, 인력부족 등으로 공동검사가 어려울 경우 한국은행에 검사를 위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부원장보 이상 임원에서 2급 이상 국·실장급으로, △재산공개 대상은 원장·부원장·상임감사에서 임원으로 각각 확대하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는 대상도 임원 등 일부 간부에서 전직원으로 확대하며, △비리직원과 위법행위자는 관련업계 취업을 제한토록 함(이종구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경향신문, 2001. 4. 7)

◎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재정경제부는 카드사들이 대부분 연 28~29%의 높은 연체 이자율을 매기고 있는 바, 법 제정을 추진중인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가칭)’에 다소 논란이 있으나 서민보호 차원에서 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연체 이자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기로 함. 여신 기관별로 대출 규모나 대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방안과 서민과 소기업에 대한 소액 대출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임(동아일보, 2001. 4. 27).
- 재정경제부는 △사채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에 3천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줄 때 연 60%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하며,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채무자는 초과 이자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사채업자가 영업지역 시·도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의 위반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하기로 함. 이에 따르면 △사채업자는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대부업자’로 분류되며 △영업소가 있는 시·도에 반드시 등록하고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며 △이 법의 규제를 받는 소액 대출의 규모를 3천만원 이하, 최고 이자율을 연 60%로 정했으나 시행령에서 이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함. 이밖에 카드회사 등 제도권 금융

기관과 사채업자 모두 조달금리와 연체기간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연체이자율의 최고 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재정경제부, 동아일보, 한국일보, 2001. 5. 8; 경향신문, 2001. 5. 7/9).

◎ 기금관리기본법·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자동차 정기검사, 여권 발급, 영화관람 등에 부과되는 준조세 형태의 각종 부담금을 정비하기 위한 ‘기금관리기본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정비안을 마련함. 이에 따르면 폐지되는 부담금은 수도권이외지역의 개발부담금, 영화 연극 관람시 부과되는 문예진흥기금, 여권발급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교통안전분담금, 진폐사업자부담금 등 6가지임. 또한 동일대상에 중복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 산림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는 통폐합하고, 건강증진기금 부담금, 폐기물처리예치금, 폐기물부담금 등 3가지는 부과대상을 일부 폐지하도록 함. 이와 함께 준조세 정비에 따라 국제교류기금, 법률구조기금, 우체국보험기금 등 7개 기금을 폐지하고, 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통합하는 등 6개 기금을 3개 기금으로 통폐합하기로 함(민주당, 경향신문, 2001. 4. 6).

◎ 기업구조조정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재정경제부는 당초 도산3법 통합을 통해 신속한 구조조정과 회사정리를 추진키로 했으나 도산3법의 법규정이 800조항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방대해 2001년 상반기중 국회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법무부가 추진중인 도산3법 통합작업과 별도로 가칭 ‘기업구조조정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함. ‘기업구조조정특별법(가칭)’은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감독과 처리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게 되며 정부가 현재 가동중인 상시구조조정체계를 법적으로 지원하게 됨. 특별법은 현재 △기업차원의 부실징후 파악단계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은행의 처리단계 △정리돼야 할 기업으로 판단된 기업에 대한 법원의 결정 등 3원화된 구조조정 및 회사정리 절차중 첫번째와 두번째 단계에 대한 필요규정을 구체화하게 됨(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경향신문, 동아일보, 2001. 4. 27).

◎ 담배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견

- 재정경제부는 국산 담배값을 자유화하고 담배인삼공사가 독점해온 담배 제조 시장도 경쟁체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함.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산 담배가격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했는데, 앞으로는 수입담배처럼 제조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담배가격을 결정해 시판되기 6일 전에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하며, 연간 50억개비 이상의 생산시설과 3백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면 누구나 담배제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PC방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업소에서는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할 방침임(중앙일보, 2001. 5. 18).

◎ 보험업법 개정의견

- 현행 보험업법의 기본틀이 너무 낡아 국제화와 정보화 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이 많다고 보고 전면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보험업법은 지난 1962년 일본법을 기초로 만들어져 1977년 대규모 개정이 이뤄진 뒤 수 차례 부분개정이 있었으나 너무 낡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재정경제부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에 연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정방향을 결정하기로 함(재정경제부).
- 현행법상 보험사의 진입과 퇴출 관련 규정을 포함해 보험사들이 적절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방안과 소비자들이 보험제도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안 및 소비자 보호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행하고, 아울러 최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보험 모집이 활발해짐에 따라 제대로 인가를 받지 않은 사이트의 영업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 보호 및 보험모집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함(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경향신문, 2001. 5. 29).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의견

-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원 묘지를 관리하거나 납골당, 화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함. 이 경우 공원묘지나 납골당, 화장터 이용료가 10% 할인되며 법 개정으로 인해 화장터나 납골당, 공원묘지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이와 함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함(국세청, 경향신문, 2001. 3. 25).

◎ 부동산세제 보유세 위주 개편관련 의견

- 현행 부동산 세제가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주택보급률이 94%에 달하는 현 시점에서 부동산 투기바람이 다시 불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선진국처럼 보유세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동산 관련세제를 중기적으로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위주에서 재산세 등 ‘보유세’ 위주로 개편할 방침이며 부동산 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 계층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임. 부동산 세제가 보유세 위주로 전환될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는 대폭인하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 수준보다 인상됨(재정경제부, 경향신문 2001. 5. 10).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 영속기업 형태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는 별도로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구조조정 전문리츠를 도입하기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임. 도입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내용은 ①총자산의 70% 이상이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에 투자되도록 하였으며, 회사의 존속기한을 반드시 정관에 기재토록 하여 일반적인 부동산투자회사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함. ②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설립과 해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③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회사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설립 및 자산운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10%) 적용을 배제하고, △설립시 자본금의 30% 현물출자를 허용하며, △30%이상 일반공모하도록 한 규정을 배제함. 구조조정 부동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부동산의 단기거래를 허용하고, 존속기한이 설정된 페이퍼 컴퍼니임을 감안하여 배당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④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는 자본금 70억원, 전문인력 5인 이상을 갖추어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함. ⑤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 및 감독을 건교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모집이나 자산운용 측면에서 투자자를 보호하는바, △건교부장관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인가시 금감위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업무수탁기관(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판매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검사,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자산관리회사의 이사나 특별관계자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여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존속기한 연장 등 특별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 청구권이나 환매를 부여하여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있음. ⑥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조세감면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임(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정책과 보도자료, 2000. 4).

◎ 상속·증여세 과세관련 입법의견

- 상속·증여에 대해 세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예외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완전 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함.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갈수록 지능화하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처하고 부의 무상이전을 막기 위해서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하여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던 상속·증여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과세를 이른 시일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임(경향신문, 2001. 6. 4).

◎ 선물업감독규정 개정안

-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였더라도 경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지 않았을 경우 선물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물업감독규정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종전 규정에는 주요출자자의 결격사유와 관련해 과거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였던 자로 되어 있어 대주주의 경영 관여여부와 주요출자자 결격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선

물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선물업 주요출자자의 결격사유는 과거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였을 경우 직·간접으로 경영에 참여한 자로 명시되어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책임부과 여부가 명확해졌으며 여타 금융권역 관련법규의 주요출자자 요건도 이같이 통일될 전망이다. 한편 개정 선물업감독규정은 시장위험액 산정시 적용되는 적격시장 범주에 유사해외 선물거래도 포함하도록 함. 유사해외선물거래는 런던금속거래소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뤄지는 금속거래, 런던귀금속시장협회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귀금속거래, 선박운임 선도거래업자협회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선박운임거래 등임(공정거래위원회, 경향신문, 2001. 4. 27).

◎ 세법 개정의견

- 그동안 제때 받지 못한 세금에는 10.95~18.25% 고율의 연체 가산세율을 적용한 반면, 더 받은 세금을 돌려줄 때는 5.84%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왔으며, 세금불복소송을 제기한 납세자의 압류 재산을 재판 진행 도중 공매에 붙이거나, 세금을 내지 못한 사업자의 재산을 공매해 생긴 금액에 또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납세자들의 불만을 사는 등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세법내용이 애매해 납세자들이 쉽게 승복하지 못하거나 세무 신고절차가 복잡해 납세자를 불편하게 하던 조항들을 재심의하고 이런 법령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 재정경제부에 개정을 요구하기로 함(허종구 국세청 법무과장, 조선일보, 2001. 4. 15).

◎ 소비자보호법시행령 개정의견

- 생명이나 신체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결함이 있는 제품을 제조·유통시키는 백화점 등 대규모 업체는 결함을 안 시점에서 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관 행정부처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중대한 결함을 사망, 2인 이상의 식중독, 3주 이상의 병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부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규제개혁위원회, 중앙일보, 2001. 5. 24).

◎ 신용카드업관련법 개정의견

<신규진입제한의 개선>

- 현행 카드업 허가기준이 실제 카드업 영위시 요구되는 요건과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의 카드업 영위능력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미비하므로, 기존회사 부실화 우려 문제는 카드사들이 대규모 이익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제한 사유로 부적절하고, 외국의 경우도 등록제(일본) 또는 별도의 규제없이 진입을 허용(미국)하고 있는 바, 현 상태로 계속 신규진입을 제한하기는 곤란함. 다만, 일시에 너무 많은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부작용(카드채 발행 급증, 카드남발 등)이 예상되고, 신용카드업은 그 특성상 일정한 규모와 건전성을 갖춘 소매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당분간은 허가요건을 다소 엄격하게 설정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진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2~3년후, 신용카드시장의 경쟁실태 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업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만 구비하면 진입이 가능하도록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행태 개선>

-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여신업법’)에서는 신용카드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신용카드업무(카드발행, 가맹점 모집, 대금결제), △부대업무(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여전회사 공통업무(신용·담보대출, 어음할인, 신용조사 등)로 구분하여 허용하고 있고, 신용카드회사들은 부대업무인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위주로 영업을 하여 그 비중이 66%(이용액 기준)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신용카드회사 본래의 기능 및 취지에 배치되어 신용카드결제를 촉진하여야 할 카드회사들이 궁극적으로 현금결제를 초래하는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을 하는 것은 모순이고, 부대업무 위주의 영업은 허가취지를 이탈하고 있음. 선진지급결제 수단인 신용카드가 현금을 대출받는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며, 필요이상의 진입수요를 촉발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카드회사의 부실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바, ①카드회사의 현금서비스 등 잔액이 결제서비스여신 잔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카드회사들의 현금대출위주의 영업을 간접적

으로 규제(여전업 감독규정 개정)하되 다만, 현재 카드사들의 부대업무 등 취급비율이 175%에 이르고 있으므로, 적절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점진적으로 축소토록 조치함. 유예기간은 △신용카드 사용증가로 결제서비스 여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 △은행 등 여타 제도권 금융기관의 가계 및 신용대출 증가 추이, △카드회사의 현금대출비중 규제시, 소비자들이 사금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서 감독규정 개정시 결정함.

<무질서한 회원유치 행위 시정 및 소비자보호 강화>

- 신용카드업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 금융업으로 분류되면서, 영업규제가 많지 않고 소비자보호도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여 현재 카드발급과 관련하여서는 18세 이상, 소득있는 자, 실명확인만을 규제하고, 선진국(미국)의 경우, 분실·도난 등 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부담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카드회사들이 약관을 근거로 책임의 상당부분을 회원에게 전가하고 있음에 따라, 가두 호객행위, 무자격자에 대한 카드남발 등 무질서한 회원유치 행위가 성행하고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①금융질서유지 차원에서 △영업점 또는 가맹점 이외의 장소에서 회원가입을 권유하거나 접수받는 행위(단, 광고전단만을 배포하는 행위는 가능), △여·수신 기타 거래의 조건으로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회원가입시 카드사용과 무관한 과다한 경품(예: 경품의 소비자 가액이 연회비를 초과하는 경우)을 제공하는 행위, △회원의 의사를 사전에 서면으로 확인함이 없이 6개월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 발급하는 행위등의 카드회원 모집 및 카드발급하는 행위를 금지(여전업 감독규정 개정)하고, ②기존의 신용카드 발급시 준수사항(소득있는 자에 대해 발급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정비하며, ③금감원 검사시, 카드발급과 관련한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위반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함. 아울러, 업계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토록 유도함.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보호 강화>

-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카드회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무분별한 카

드발급을 자제토록 하고 소비자를 보호함. 1차적으로, 신용카드회사들의 약관 내용중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을 시정하고, 특히,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여 카드 부정사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함.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책임을 지고 소비자는 분실·도난 등의 사실을 인지한 후 2영업일 내에 통보하면 일정금액까지만 책임을 지도록 ‘여전업법’에서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유도>

- 신용카드회사가 받고 있는 수수료(금리)는 ‘가맹점 수수료’ 등 크게 5종류가 있고,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현재 18~29% 수준으로 그동안의 조달금리 인하 등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으로 이는 △은행 등에 비해 조달금리가 높은 점 △여신기간이 단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어려운 점 △담보확보가 어려운 신용대출인 점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이 이용하는 점등을 고려할 때, 은행금리보다 높은 것은 불가피한 것인 바, 신용카드회사들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신용카드회사들이 받고 있는 현행 수수료가 적정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인하토록 유도하고, 신규진입 허용 등으로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촉진하며, 카드회사간 수수료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시 강력 제재함. 일률적인 수수료 산정을 지양하고, 고객의 신용도를 반영하는 등 수수료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토록 유도하며, 카드회사 경영공시항목에 각종 수수료율을 포함시키고 인터넷 게시 등 공시방법도 다양화시킴.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등>

- 신용카드회사의 사채 발행액과 금융기관 차입액, 여신액 등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수신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건전성감독이 미흡했고, 가맹점공동망 이용제도 등이 7개 전업사 위주로 운용되어 카드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①신용카드회사에 대한 경영건전

성 감독을 강화하여 △경영지도기준 및 경영개선명령제 도입(개정 여전업법에 기반영), △사의이사·감사위원회·준법감시인 제도 도입(개정 여전업법에 기반영)하고, ②전업카드사와 겸영은행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여 △겸영은행에 대해 여전협회 가입시 특별회원으로만 가입토록 하고 의결권을 제한하는 차별적인 요소를 개선(여전협회 정관 개정)하고, △겸영은행들이 전업카드사를 통하지 않고, 가맹점 공동이용망을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함(금융감독원 공보실 보도자료, 2001. 5. 4).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직접 만들어 관련 업계에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임. 현재는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 제정을 신청하면 공정위가 이를 승인, 사업자들에게 채택을 권고하고 있어 업계의 협조 없이는 표준약관 시행이 힘든 상황인 바, 소비자 이익과 직결되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2001년 9월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개정할 방침임(경향신문, 2001. 5. 1).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의견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초과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이를 중개, 알선하는 소위 ‘카드깡’ 을 처벌하는 규정임. 최근 인터넷을 통한 카드깡 범죄에 대한 공소가 잇따르고 있으나 입법 미비로 처벌할 마땅한 범조항이 없는 바, 신속한 법개정이 필요함(염기창 서울지법 형사 2단독 판사, 한국일보, 2001. 4. 24).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개정안

- 재정경제부는 백화점 상품권카드와 고속도로 통행카드 등 선불 카드의 발행한도를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카드 가맹점이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가하거나 카드 판매를 거절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카드회사가 가맹점 계약을 파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

(신용카드업)법시행령·시행규칙'과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을 개정·시행하기로 함. 재정경제부는 또 신용카드업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구축, 외부 차입에 의한 출자 금지, 법인 출자자인 경우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3배 이상이 될 것, 부채비율 300% 이내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세부요건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자산 2조원 이상 신용카드사와 3000억원 이상 신용금고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자율합병시 없어지는 금고의 점포수만큼 새로운 출장소의 신설을 허용하고 금고에서 개인연금 판매, 신용카드 회원모집 대행, 국공채 창구 판매 등의 업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조선일보, 2001. 4. 15).

◎ 외국기업인수 신고제도관련 의견

- 현재 국내 또는 외국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만 기업결합을 신고토록 하고 있어 외국기업 인수시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바, 신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기업결합 사후 신고시 시정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사전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며, 합작투자나 포괄적 제휴에 따른 지식과 정보 독점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임(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세종연구원 초청강연, 2001. 4. 23; 한국일보, 2001. 4. 23).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의견

-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정치 경력자나 자격 미달자의 기관장 선임을 막도록 할 필요가 있음(김만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중앙일보, 2001. 5. 12).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견

- 재정경제부는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고 증권거래세는 오는 2003년까지 비과세되며, 소액주주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신설되고 분리과

세 요건도 3년 이상 보유에서 1년이상으로 완화하여 2003년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임. 개정안에 따르면 △연기금이 상장·협회등록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법인세 전액을 비과세대상에 추가하며, △이와 함께 국민연금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34개 국가관리기금은 현재도 주식투자에 대해 법인세·증권거래세가 비과세 되고 있으나 앞으로 공무원연금기금 등 26개 민간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해서도 국가관리기금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상장 또는 등록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소득세법상 소액주주로서 액면기준 5천만원이하일 때 비과세하며 △액면기준 3억원 이하인 경우는 10%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하며,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요건도 2년 이상 보유에서 1년 이상 보유로 완화하고 한도를 액면기준 1천800만원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2003년말까지 적용하기로 하고, △2001년 7월 설립예정인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서 거래되는 상장·등록주식의 과세제도를 거래소·협회중개시장 거래에 대한 과세와 같도록 정비하도록 함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종전 0.5%에서 0.3%로 내려가고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도 비과세함. 이밖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03년 말까지 면세하고 △대도시에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시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0.4%)로 과세하기로 함(경향신문, 2001. 4. 24).

-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현재의 10%에서 2004년 말까지 7%로 경감하는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정 및 개정 방향을 확정함.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경감과 함께 2004년 말까지 전자상거래를 통한 법인소득세를 30% 낮추고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함. 또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확대하고 전자문서의 범위에 MP3와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하고, ‘전자서명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방문판매법’, ‘소비자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 등 전자상거래 관련법을 2001년내에 개정할 방침임.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가칭)’, ‘데이터베이스보호

및이용촉진법(가칭), ‘전자결제법(가칭)’ 등의 제정도 추진함(곽치영 민주당 전자거래활성화 정책기획단 부위원장, 경향신문, 2001. 4. 26).

- 지금까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던 것이 앞으로는 20%로 공제폭이 확대되고 연간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임. 또한 개정안은 앞으로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신축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토록 했고,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해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토록 했으며,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음(재정경제부, 경향신문 2001. 6. 6).
- 당정은 2001년 7월부터 외부 용역회사가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던 방침을 바꿔 2002년 말까지 시행을 유보하기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기로 결정함. 이에 따라 당초 전국 아파트 5백20만가구 중 용역회사가 위탁관리하는 3백10만가구에 난방비·수도료·전기료 등을 제외한 일반 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던 방안을 바꾸어 2002년 말까지는 현행대로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가세(평당 3원)만 납부하고, 2003년부터 25.7평 초과 아파트 주민은 관리비에 부가세(40평의 경우 6,000원 가량)를 내도록 할 방침임(경향신문, 2001. 4. 11).

◎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통합관련 입법의견

- 한국개발연구원(KDI)가 투자신탁회사와 은행 신탁 등에 대해 적용하는 법률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KDI의 연구결과에 따라 관련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정경제부도 관련 규정을 통일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해 앞으로 통합 작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임. KDI는 보고서에서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은행신탁 등 다양한 집합투자제도가 각기 다른 법규에 의해 규율되어 경쟁환경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통합법 제정을 목표로 규제환

경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KDI는 현재 투자신탁회사는 ‘증권투자신탁업법’으로, 뮤추얼펀드는 ‘증권투자회사법’으로, 은행신탁은 ‘신탁업법’의 적용을 각각 받고 있는데 고객 자금을 모아 대신 투신하는 간접투자라는 점에서 성격이 같은데 회사별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으며, 계약형인 투신사는 거래 단계에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반면 회사형인 뮤추얼펀드는 이같은 세제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유가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는 투신사나 증권투자회사와 달리 은행신탁은 부동산투자와 대출 등으로 다양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으며 신상품이 한 업종에만 먼저 허용되어 시중 자금이 한쪽으로 몰리는 등 자금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것도 통합법률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함(중앙일보, 2001. 4. 20).

◎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관련 입법의견

-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하반기 이후 국내외 경제여건 호전시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경제 회복에 대비하고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구조조정 및 투자활성화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①재계가 건의한 사항중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기업환경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바,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출자에 관한 사항으로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기업구조조정관련 출자의 예외인정시한 2년 연장('01.3말→'03.3말), 계열회사 매각대금으로 신규핵심역량 육성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 예외인정, 영업양도로 취득한 신설회사의 주식에 대한 예외인정, '98.1.1~'01.3.31에 이루어진 합병을 위한 주식취득시 예외인정 기산일을 현행 취득시점에서 구조조정 관련 예외와 같이 '01.4.1로 명시), △구조조정과정에서 계열사 자본확충을 위해 대주주 책임원칙에 입각한 불가피한 출자(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대주주로부터 증여 받은 타회사 주식에 대한 예외인정(2년)),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SOC민자사업에 대한 출자의 적용제외, △기업 자체노력만으로는 기

한내 해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법정관리·화의 중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의 한도초과 출자의 해소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친족분리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집단의 해소 유예기간은 현행대로 1년)), ②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예외인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다음 사항 등은 수용하지 않기로 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예외인정 요건완화, △분사기업에 대한 계열제외 요건완화 또는 출자의 적용제외, △출자총액산정시 취득가 및 장부가중 낮은 금액 적용, △소유분산 우량기업제도 도입 또는 해소시킨 연장, △한도초과 미해소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유예, △공기업민영화과정에서 자기주식 취득에 의한 순자산 감소의 예외인정, △부실금융정상화를 위해 취득한 금융기관 주식의 예외인정,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대한 출자적용제외, △법규상 일정기간 처분제한된 신규 등록사 주식의 예외인정, △정부가 사업자로 선정한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적용제외, △금융기관 지급여력비율 충족을 위한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예외인정 기간 확대, △공기업 민영화 참여지분의 예외인정, △화의·법정관리중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예외 인정함(재정경제부 기업집단과 보도자료, 2000. 5. 31).

◎ 통계법 개정의견

-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한국은행 등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통계를 개선하기 위해 통계청 공무원이 사업체 등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무슨 근거로 조사하느냐’는 식의 항의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바, ‘통계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앞으로 통계청이 중앙 행정부처나 한국은행 이외에도 한국산업단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지방 공사 및 공단 등에 대해서도 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통계법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함. 이에 따르면 통계청은 한국은행 등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통계의 중지·변경·개선을 위해 해당 통계작성기관이 조사한 사업체, 가구, 관련 단체 등을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권

한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현재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 자치단체에 대해서만 통계 작성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쳐 직접 시·군·구 등 기초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게 함(문화일보, 2001. 6. 4).

◎ 특별소비세 폐지관련 의견

- 국세청은 주류구매전용카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흥업소의 매출이 대부분 드러나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이므로 현실에 맞게 세금 부담을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룬살롱,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에 대해 1982년부터 부과해온 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 20%+교육세 6%)를 2002년부터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세무당국에 따르면 특별소비세 등 유흥주점에 대한 세율이 높아 탈세와 변칙거래가 많고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는 바, 특소세를 폐지하는 대신 주류구매전용카드제를 정착시킬 예정임. 현재 상당수 유흥업소가 세금을 덜 내려고 매출액의 70%까지 ‘카드깡’ 등을 통한 변칙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를 폐지해도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는 데다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쓰면 유흥업소의 신고 매출이 적어도 9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세금은 더 건힐 것으로 예상됨. 유흥주점 업체는 특별소비세 외에도 부가가치세(10%), 소득세(10%), 지방세 등 세금만 매출의 56%인 상황에서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쓰라는 것은 장사를 하지 말거나 탈세를 더 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로 주류구매전용카드제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특소세 폐지를 요구해왔음(중앙일보, 2001. 6. 7).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하도급업체의 부도를 방지하고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①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를 확대하여 현행 직접지급사유중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의무를 불이행하고 하도급대금을 2회분이상 미지급한 경우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거나, 지급을 보증하였으나 하도급대금을 2회분이상 미지급한 경우에 직접지급하도록 범위를 확대

함. 다만, 발주자의 기성주기가 장기여서 직접지급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해지는 경우를 감안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직접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의 기성확인 요청 등에 대한 원사업자의 협조의무를 신설함. ②보증면제업체의 부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확보되고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시점까지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고시’를 잠정적으로 폐지함(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 보도자료, 2000. 5. 26).

◎ 디지털 DB물 권리보호 추진관련 의견

- 민주당은 앞으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 등을 담은 데이터베이스(DB)물도 창작성과 관계없이 사실상 저작권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전자도서관 등 각종 정보나 저작물의 디지털화 작업이 많은 시간과 제작 비용이 소모됨에도 제작자 권리보호가 빈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러한 디지털 DB물 등에 대해 ‘디지털화권’을 인정하는 ‘DB보호및이용촉진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임. 디지털화권은 사실상 책이나 예술작품 등에 대한 저작권과 같은 개념으로, 현재는 각종 DB물을 ‘저작권법’ 조항을 확대해석해 보호할 수 있으나 창작성 요건과 전달방식 차이 등의 한계로 권리인정이 쉽지 않은 상황임. 특히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서는 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보고 △디지털화권의 인정범위 △권리보호 내용 등 세부조항을 다듬기 위하여 회의를 열어 법안을 확정된 뒤 여야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함(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기획단, 경향신문, 2001. 6. 6).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의견

- 규제개혁위원회는 벤처기업으로 지정돼 조세 및 자금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해 2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벤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함. 개정안은 벤처기업 지정 요건 중 1백분의 5 이상으로 일괄 규정했던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 개발비 비율을 업종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키로 함(중앙일보, 2001. 4. 5).

◎ 산업발전법 개정의견

- 산업자원부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CRC(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관리 규정을 바꾼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이번 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CRC 등록에 필요한 납입자본

금 기준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CRC에 창업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AMC) 인력에 준하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구조조정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CRC 관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등록취소 외에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료제출 명령과 현장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난 1998년 2월 도입된 CRC는 지금까지 총 71개사(조합 24개)가 등록돼 있는 상태임(조선일보, 2001. 5. 6; 한국일보, 2001. 5. 7).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개정법률에 의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내 상업지역·준주거지역 등에 소규모로 개발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①서울에 집중(벤처기업의 47%가 서울소재)된 첨단산업의 지방분산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지 못하도록 함. ② 민간기업등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단지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요청면적을 3만㎡ 이상으로 제한함. ③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소프트웨어진흥구역 등 다른 법률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구·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세제·금융 등의 지원과 함께, 관련법령에 의한 자금·기술·인력 지원 등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산업 지원관련 제도들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함. ④미분양 비율이 과도한 지역 등에 대해 산업단지 신규지정을 제한하도록 한 개정법률에 따라, 지정 제한기준이 되는 미분양 비율 등을 정함. 다만, 실수요 기업이 단지지정을 요청하여 개발하는 산업단지는 미분양 우려가 없으므로 미분양 비율과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함. ⑤개정법률의 위임에 따라 산업단지내 국유지의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범위 및 납부방법을 정함. 분할납부가 가능한 사업시행자의 범위는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 사업시행자로 정하고, 국유재산법의 예에 따

라 할부잔액에 대해 연 8%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건설교통부 토지정책국 입지계획과 보도자료).

- 첨단산업의 지방분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하여 서울특별시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금지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민간기업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단지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요청면적을 3만㎡ 이상으로 제한하게 됨.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소프트웨어 진흥구역 등을 우선 지정토록 해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세제·금융 지원 등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 신규지정을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미분양 비율이 5% 이상인 시·도, 일반지방산업단지는 미분양 비율이 10% 이상인 시·도,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정면적이 330만㎡ 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이 10% 이상인 시·도로 제한함(건설교통부, 한겨레, 2001. 5. 7).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

-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휠체어리프트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승강기 범위에 휠체어리프트를 포함시켜 법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바, 이에 따라 휠체어리프트에 대하여 검사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제작업체는 동 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생산으로 품질 및 성능을 한층 향상시키고 승강기의 관리기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검사(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용자에게 안전운행 제고 및 편의를 도모하게 됨. 이번 개정법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산업자원부, 전자신문, 2001. 4. 18).

◎ 원자력법시행령 개정안

- 과학기술부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원자력법시행령’에 반영하

는 차원에서 ‘원자력법시행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함. 시행령안에 따르면 원자로운영자들은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년마다 안전성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6월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과학기술부 장관에 제출해야 하며,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부담해야 할 원자력 연구개발 부담금은 당해 원자로를 운전해 생산한 전년도 전력량에 1.2원/kWh를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특히 방사선안전관리와 관련이 없는 방사선발생장치 보관시설의 설치·변경시 시설검사를 면제토록 했으며 평소 방사선안전관리가 우수한 허가 사용자의 정기검사를 면제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성화를 유도키로 함. 또한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 등의 수입시 설계승인 조항을 추가해 사전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사성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누설되어 제한값을 초과하거나 피폭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사업자는 사전 장애방어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이문기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 과장, 전자신문, 2001. 4. 4).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견

- 규제개혁위원회는 환경부와 노동부가 지금까지 벤지딘 등 3종을 각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조금지품목으로 중복 지정하고 이를 위반시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나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산업안전보건법)으로 다르게 처벌해 오고 있어 문제점이 지적되는 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표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중으로 처벌하게 돼 있는 규정도 개선했으며, 환경부와 노동부가 따로 실시하던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도 연 2회 합동점검으로 바꾸기로 하고, 환경부와 노동부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중복 심사하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도 환경부로 창구를 일원화하도록 함(동아일보, 2001. 5. 14).

◎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특별조치법 개정의견

- 정당은 2006년 2월말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특별조치법’을 개정하기로 함. 개정법에서는 주거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을 재개발할 때, 토지 용도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며, 이에 따라 용적률이 현재의 최대 300%에서 700%까지 대폭 올라가 재래시장 재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전국 재래시장 중 주거지역에 소재한 35% 정도의 재래시장은 법개정 후 2006년 2월까지 재개발에 착수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적용 받게되고, 재개발을 위한 용도변경 등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 현재 2년 가량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이도록할 방침임 (조선일보, 2001. 4. 30).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가칭) 제정의견

- 중소기업청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가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 기술 지원에 관한 조항이 일원화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되었음. 그동안 기술지원 관련 조항들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에서 관장하는 기술관련 법률에 일부 포함돼 있었으나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기술지원 법률이 마련되기는 처음으로 법안에 따르면 △중장기적인 기술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 수립되고 △주요시책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중기청 산하에 관련 부처 및 민간기관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가 설치되며, △생산기술연구원 등 기존의 전문기관 가운데 ‘중소기업기술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중기청이 추진하는 각종 기술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정보통신(IT)화 지원을 위해 ‘정보화경영원’이라는 민간 컨설팅 기관을 설치하기로 함(경향신문, 2001. 4. 28).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 개정의견

- 산업자원부는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일반 공산품도 자동차 등과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교환·환불·수리 등의 리콜 명령을 받게 하는 내용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함. 개정 시행령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일반 공산품이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체 부담하

에 해당 공산품을 직접 파기 또는 수거토록 하고, 위험 정도가 큰 공산품에 대해선 정부가 제조 및 수입업체에 이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표토록 하며 해당 공산품의 교환, 환불, 수리 등의 리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천만원 한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한국경제, 2001. 3. 18).

◎ 농지법 개정의견

- 그동안 농업보호구역내에서 100㎡미만의 음식점, 위락·숙박시설의 신설이 허용되었으나 사업주들이 음식점, 러브호텔 등을 허가면적보다 넓게 짓거나 인근농지를 불법적으로 전용해 주차장 및 진입로로 사용, 농지를 훼손하고 농업보호구역의 경관과 수질을 해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농림부는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함. 개정안에서는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해 농업보호구역내에서는 일반·휴게 음식점과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 모텔등 위락·숙박시설 신축을 전면 금지하고 농지를 살 때 해당지역 농지관리위원 2명의 확인을 받지 않고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지취득 절차를 개선할 예정임(문화일보 2001. 6. 1).

◎ 축산법 등 개정의견

- 농림부는 지나친 단기 투기성 돼지사육을 막고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함으로써 돼지고기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양돈업 등록제'를 도입키로 하고 '축산법'등 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임. 개정안은 농가의 업종전환을 유도, 양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마리 이상 돼지를 사육하거나 축사를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실시하고, 축산분뇨처리방안과 위생 및 방역요건등을 기준으로 등록요건을 정한 후 사육두수 증감등 등록사항이 변할 때는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출하되는 돼지에는 등록농장의 고유번호를 표시하는 방안을 담은 예정임(문화일보, 2001. 4. 9).

◎ 감리제도 개선관련 입법의견

- 공사 감리자가 부실 감리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등 건설공사 감리제도를 대폭 손질하여 부실 감리자에 대해서는 감리업체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고, 부실 정도가 심한 경우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업계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며, 감리원의 경력 요건을 대폭 상향조정, 대규모 공사의 책임감리원(감리단장)은 비슷한 규모의 공사 감리경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강화하기로 함(건설교통부, 한국일보, 2001. 3. 23).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

- ①개발제한구역내에 입지가 불가피한 공공용시설, 국방군사시설이라면 과다한 훼손부담금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훼손부담금(개발제한구역 안팎 동일 지목간의 지가차액)의 부담률을 50~100%로 부과하던 것을 20%로 조정하고, 도로·철도·상하수도 등 공공용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20% 정함. ②주민지원사업·이주단지조성은 주민의 생활편익과 직결됨을 감안 훼손부담금을 전액감면함으로써 훼손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면서도 다시 훼손부담금을 부과하는 모순을 시정하도록 함. ③취락지구 지정기준을 호수밀도 15~25호/ha에서 10~20호/ha로 완화함. 같은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취락지구인 경우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정부보조로 주민지원사업 등이 가능하므로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④취락지구 지정기한을 2001년 6월 30일에서 2002년 6월 30일로 1년 연장하고, 취락지구 지정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등 소요 기간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2002.6.30.까지 취락지구를 정할 수 있도록 함. ⑤이와 함께 주택 등의 이축은 2002년 6월 30일까지는 동 지정이 없더라도 취락지구 지정요건을 갖춘 취락으로 허용함. ⑥종래에는 건축물을 이축하고 남은 대지에는 주택 등의 신축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랐던 경우에는 동 제한을 폐지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소지가 제거되도록 함. ⑦마을버스, 시외버스용 공영차고지를 허용함. 개발제한구역내에 차고지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만을 설치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를 위한 공영차고지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시외버스차고지는 시외버스터미널안이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인근지역에 차고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 허용함(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관리과, 2001. 6. 7).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 그동안 아파트등 대형건축물 공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면서도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타워크레인은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소유자는 근저당의 활용등 재산권행사가 확대되고 설치검사와 정기적인 안전점검제도를 통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①건설기계 등록원부의 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시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정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포함됨에 따라 안전기준과 검사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굴삭기 연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보완하여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도록 하였음. ②행정간소화를 위하여 건설기계 등록시 주민등록증 및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삭제하여 신청서류의 간소화와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음.

: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 건설기재과 보도자료, 2001. 5. 10.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규제개혁위는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1999년 4월)됨에 따라 경쟁이 활성화된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건설업 등록때만 기준을 갖추

고 이후 무자격영업을 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가공회사)’등 부적격 업체들이 적격업체와 동일한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 과도한 수주경쟁으로 건전한 업체를 동반 부실화시키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어 등록갱신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건설발주자의 전문능력 부족을 보완하고 건설공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입한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사업관리사업자의 공사수행능력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함(경향신문, 2001. 4. 5).

◎ 건축물 설계·허가·용도변경 기준 강화관련 의견

- 건설교통부는 건축절차와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최근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건축법을 개정할 방침임. 건설교통부는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용도변경, 착공, 건축사의 설계 등 현행 건축법에 규정된 절차, 기준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규제완화차원에서 단행된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에 대한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건축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경향신문, 2001. 6. 7).

◎ 건축법 개정의견

- 서울시는 더이상의 다가구·다세대주택 주거환경 악화를 막고 소방도로 확보하기 위하여 앞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통합하고 건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임(경향신문, 2001. 4. 24).
- 서울시는 시 건축위 심의를 받지 않는 건축물의 인허가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선 구청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승인이나 일반건축물 인허가를 할 때 도시경관을 해치는 요소를 줄일 수 있도록 건축심의를 강화하기로 함. 현재 피난, 구조안전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돼 있는 구청의 건축심의에 대해 주변 가로환경 및 도로축, 인접건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주변과 조화

로운 건축계획을 유도하는 동시에 경관지구 심의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건축법령을 개정할 방침임.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동주택 측면이 비스듬하거나 계단형태로 지어지는 것을 가급적 피하고 평평한 지붕은 경사진 지붕으로 바꾸는 한편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함께 사는 입주민들이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는 사례를 개선하기로 함(동아일보, 2001. 4. 16).

◎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견

- 기존 건물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함. 이에 따라 2001년 7월 중순부터 지은 지 20년 이상된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의 개·보수(리모델링)와 주차장 등 각종 시설 증축이 용이해지도록 법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그동안 일조권과 용적률문제 등으로 금지된 복도식의 계단식 변경이 가능해지고, △발코니와 거실 등도 확장할 수 있으며, △주차장과 운동시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도 증축할 수 있게 되고, △단독주택 등 일반건축물도 연면적이 10% 이상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과 같은 개·보수, 증축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됨(건설교통부, 조선일보, 2001. 5. 7; 경향신문, 중앙일보, 2001. 5. 8).

◎ 공항주변지원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공항주변에 도로망,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허술하고 관광, 레저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공항 활용의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바, 중앙정부의 지원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함(인천시, 중앙일보, 2001. 5. 18).

◎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개정안

-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로·철도등 교통시설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는 교통기술사 등 일정요건의 전문인력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으로 제한하고, 교통기술의 이용·보급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그간 국내개발이 진행되어온 ITS와 경량전철등 교통기술을 적극 활용할 예정임. 이를 위하여 마련된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교통투자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기초자료인 교통조사자료가 조사방법·대상등이 상이하고 신뢰성이 낮아 사업별 비교를 통한 투자우선순위 선정 등이 곤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교통조사의 방법·기준 등을 표준화하는 교통조사지침을 제정·시행하고, 교통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 주기의 국가교통조사서를 발행·공표하도록 함. ②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로·철도등 교통시설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기술사·교통관련 학위소지자등 일정요건의 전문인력을 갖춘 자만이 타당성평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③첨단 교통기술등 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④국내 최초로 개발하거나 외국에서 도입·개량한 교통기술을 신교통기술로 지정하여 보급을 촉진하고,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된 교통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수송물류정책과 보도자료, 2001. 5. 23).

◎ 도시개발법 개정의견

- 지금까지 토목 또는 토목건축면허를 가진 업체들만 도시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건설 업계의 경기 부양과 민간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 요건에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등록업체인 주택업체들이 포함되도록 ‘도시개발법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1년 하반기중 시행할 계획임. 이에 따라 택지개발이나 관광단지, 산업단지 조성에서 민간 업체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주택건설업체들도 도시개발사업을 시공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임(건설교통부, 경향신문, 2001. 4. 6).

◎ 상가임대차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상가 임대차 과정에서 임대료 과다인상,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기간의 불안정성, 월세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 미반

환 문제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한 바, 이 법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상가 인수,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마친 경우 등에 한해 제3자에 대해 임대차 효력을 인정, 임차인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하더라도 계약 유효기간을 최소 1년으로 규정하며,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상가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임차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등 각종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임대료 또는 보증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료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인정하며, △아울러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되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모두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함(경향신문, 2001. 4. 15).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안

-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과 관련하여 셔틀버스의 예외적 허가대상 지역을 정하고, 전세버스의 통근·통학 운송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①운영이 금지되는 백화점 등의 무료 셔틀버스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셔틀버스의 예외적 허가대상 지역을 △노선버스나 지하철등 대중교통수단이 운행되지 않거나 이들 수단에서의 접근이 불편한 지역의 고객을 수송하는 경우와 △공사 등으로 인해 버스나 지하철 등의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의 고객을 일시적으로 수송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함(안 제27조의2). ②전세버스의 통근·통학운송을 둘러싼 업종간 마찰을 방지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세버스에 의한 통근·통학운송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전세버스의 편법적인 노선영업 근절을 위하여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 등을 수수하는 것을 엄

격히 금지하고, ③부실경영으로 운송서비스 확보가 어려운 운수업체의 시장퇴출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면허 또는 등록취소의 요건을 일부 강화하고 있음(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운수정책과, 2001. 4. 10).

◎ 예비면허제 도입관련 의견

- 초보운전 때부터 준법운전 습관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면허 발급이후 일정기간(1~2년) 내에는 작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하는 ‘예비면허제’를 2001년내에 도입하고,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주 3회 이상 실시하는 한편,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선진입 여부에 관계없이 직진 차량이 먼저 통과하게 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들어서면 차량은 무조건 정지하도록 하는 등 통행우선권 규정을 확립하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초보운전자들의 사망사고 발생 비율이 전체 사망사고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예비면허제’를 실시하되, 일정기간 동안 초보운전자들을 지켜본 뒤 면허를 주는 관찰기간제 도입방안도 병행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 초과, 대형사고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특별안전교육 실시 등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집중관리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건설교통부, 동아일보, 2001. 3. 26; 경향신문, 2001. 3. 27).

◎ 자동차검사제도 개선관련 입법의견

- 자동차소유자들이 자동차검사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①검사결과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자동차기능진단서비스로 자동차검사제도를 개편하고, 이의 일환으로 검사항목을 확대(예: 버스 57→98개 항목)하여 자동차의 상태를 자세하게 자동차소유자에게 제공하고 ②검사서비스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동차 검사소를 담당관청,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공표하는 검사소의 검사능력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함. ③자동차의 검사기간을 현재 검사유효기간만료일 기준 전후 각각 15일의 총 1개월에서 전후 1개월의 총 2개월로 확대하여 검사의 편리성 제고 및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과 ④자동

차검사시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중대결함이 발견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정비완료시까지 운영을 정지하는 운행정지제도를 도입하고 ⑤대형교통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중·대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에 대한 검사는 공공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전담토록 하여 검사결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교통안전을 더욱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⑥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운행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도로운행 적합성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해 대형차량에 대하여는 노상에서 수시로 안전도를 확인하는 노변수시검사(Roadside Spot Checks)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함. ⑦검사소에 대하여는 검사의 신뢰성과 엄정한 검사를 위하여 검사시설의 강화와 검사능력대수를 제한하고, 이용자를 위한 수검대기실 확보 등 수검편의를 제고하여 검사에 대한 인식제고와 편의성을 도모하도록 함(건설교통부, 『자동차검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2001. 4. 20).

◎ 자동차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견

- 무단 방치 차량이 해마다 6만대에 이르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현행 법규상 처리기일은 6개월이 소요돼 행정력을 낭비하는 문제가 있고, 현재 자동차 무단 방치시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나 전과자 양산 등의 문제가 있는 바, 2001년 7월부터는 이를 대신해 시·군·구청 업무 담당 공무원이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면 처벌절차가 종결되는 통고처분제도가 도입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임. 이에 따라 2001년 7월부터는 차량을 무단 방치할 경우 지금까지 처벌이 면제되던 자진처분 기간중에도 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됨(경향신문, 2001. 3. 13/14).
- 건설교통부는 2003년부터 중대결함이 발견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비가 끝날때까지 운영이 정지되며, 또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을 만료일전후 15일에서 1개월로 확대하는 자동차검사제도 개선을 이루기 위해 2002년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003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시안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때 제동장치 이상 등 중대결함이 발견된 차량은 정비완료때까지 도로에 나오지 못하도록 검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검사유효기

간을 만료일기준으로 전후 1개월로 늘려 차량보유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과태료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으며, 운행중인 대형차량을 언제든지 세워 안전도를 검사할 수 있는 노변 수시검사제도도 도입해 대형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할 예정이고, 대형교통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16인승 이상 중대형 승합차와 5t이상 화물자동차에 대한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이 전담토록 할 예정임(교통개발연구원 시안,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 전국경제인연합회관 대회의실, 2001. 4. 20).

-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중 정비업위반 및 자동차무단방치행위에 대해 도입되는 통고처분제의 시행을 위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을 정하여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한 자가 자진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차종에 따라 20만원에서 30만원,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안전과 직결되는 조향 및 제동장치와 관련된 정비작업범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현행대로 형사처벌 하되, 기타 부분의 작업범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는 자동차제작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던 허용된 정비작업을 위한 선행작업으로서 점검·정비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탈·부착행위는 정비작업 위반이 아님을 명확히하여 논란의 소지를 해소함(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자동차관리과 보도자료, 2000. 4).

◎ 재개발·재건축 관련법규의 정비

-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이미 90%가 넘는 상태여서 주택과 상가의 신축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은 어려운 만큼 신도시 건설만이 아니라 도시내부구조의 개조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체가 사업주체가 되면 안정적인 사업 시행 등으로 재건축 등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나 현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규가 너무 까다롭거나 미비점이 있어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서 지방자치단체도 주택이나 상가의 재개발·재건축의 주체로 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임. 이와 함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과 관련, 기존 거주자들에게 이사비용, 전·월세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임(강운태 민주당 제2정도위원장, 경향신문, 2001. 3. 30).

◎ 주거및도시환경정비법(가칭) 제정의견

- 건설교통부는 이른바 ‘달동네 주택’은 재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아파트를 지을 수 있지만 아파트 단지들로 둘러싸여 일조권이 제한되는 단독주택들은 아파트 재건축을 할 수 없었다며 법 제정을 통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독주택의 재건축을 활발하게 할 목적으로 300~500가구의 넓은 단독주택들도 조합을 결성,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및도시환경정비법(가칭)’을 제정하여 이르면 2002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임. 그동안 넓은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2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 등으로 신축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대단위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했었는 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해 도로와 학교, 공원, 상하수도 설치 등 공공시설 확보 방안을 마련하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음(동아일보, 조선일보, 2001. 4. 16).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의견

- 건설교통부는 2001년 4월초부터 신축되는 아파트단지에는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삿짐을 나룰 수 있는 화물용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인양기(곤도라)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마련함. 이번 개정안은 현재 입주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초고속통신망용 구내통신선로설비(UTP케이블)를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에 반드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아파트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 6인승 이상인 승용 승강기를 13인승 이상의 화물용 승강기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대신 인양기(곤도라) 설치기준을 폐지하고 있음(매일경제, 2001. 4. 24).

◎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의견

- 주상복합건물 허가규정과 관련하여 상업, 준주거지역에서의 주상복합건물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상업용도가 주용도가 되어야 함에도 최고 90%까지 주거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문제점이 계속됨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중임. 지난해 도시계획조례에서 주거비율을 높이면 용적률을 하

향조정토록 했음에도 도심의 주상복합건물내 주거비율이 좀처럼 줄지 않고 오히려 90%까지 치솟고 있는 바, 주택비율이 50% 이상이면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승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절차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주택비율을 50%내로 제한하고, 주상복합건물이 '건축법'상 건축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게 하는 분양승인 제도가 없어, 허가과정에서 건축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사중 건축주의 부도로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주상복합건물도 동시분양처럼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중임(배경동 서울시 주택국장, 경향신문, 2001. 4. 29).

- 주택보급률이 90%를 넘고 환경 및 복지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공급물량 확대위주의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을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 기존주택의 적정한 관리, 서민 주거안정대책에 중점을 둔 '주택법(가칭)'으로 확대·개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하기로 함. '주택법(가칭)'에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주택개량자금을 대폭 지원할 방침이며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당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환경요소 등이 포함될 예정임. 향후 주택정책 수립때 주택보급률은 양적 지표로, 최저주거기준은 질적 지표로 사용할 계획임. 이와 함께 매년 수립하고 있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이 공급자 위주의 양적인 성장정책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5년단위의 '국토종합계획'으로 바꾸고 양적 팽창보다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주거기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함(경향신문, 2001. 5. 31).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의견

- 주상복합건물은 상당부분이 주택용으로 쓰이면서도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있고, 상업용으로 쓰여야 할 주상복합 건물이 사업성을 앞세운 업자들 때문에 주택비율이 90%까지 되는 등 변칙 이용되고 있는 바, 법의 허점을 막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비율이 50%를 넘을 수 없게 되고 분양 절차도 임의 분양제 대신 시

장의 승인을 꼭 받도록 규제가 크게 강화될 예정임(배경동 서울특별시 주택국장, 한겨레, 2001. 4. 29).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월세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임대차 계약의 법적 기한인 2년 안에는 집주인이 임의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여, ‘월세의 상한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에 임차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도록 함. 월세 상한선으로 시민단체는 전세자금대출 시중금리를 제시하며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원들은 전세자금대출 시중금리의 1.5배 가량을 적정선으로 보고 시행령에 위임키로 하였으며, 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분쟁조정위’를 설치,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하에 조정을 신청하고 해당조정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할 예정임(민주당 김근태, 이재정, 심재권의원, 한나라당 김원웅, 서상섭, 안영근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 연합통신, 동아일보, 2001. 5. 6; 경향신문, 2001. 5. 7).

◎ 최저낙찰제 보완관련 입법의견

- 원가절감을 위한 건설업체간 기술경쟁과 정부예산절감 도모를 위하여 금년부터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으로서 입찰자격사전심사(PQ) 대상인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나친 저가투찰을 방지하고 보증기관에 의해 우량업체와 부실업체가 선별될 수 있도록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연대보증 대신 계약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저가낙찰제 시행 결과 저가낙찰이 이루어져 부실시공,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경영악화 및 보증사고시 보증기관의 동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어 보완방안을 마련한 바, ①송도신도시 입찰결과 공제조합의 담보제공 기준선에 근접하여 낙찰가격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건설공제조합의 담보제공 또는 보증거부 낙찰률 기준을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②현재 우량업체(20개사)에 대해서는 심사없이 무담보로 보증인수하고 있는 서

울보증보험에 대하여도 앞으로는 73%미만으로 낙찰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60%미만으로 낙찰받은 경우와 동일업체가 연속해서 저가낙찰하는 경우 보증인수를 제한함. ③현재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토록 하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불하고 있으나, 이를 73%미만 낙찰공사로 상향조정함(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 건설경제과 보도자료).

◎ 취락지구개발기준관련 개정의견

- 건설교통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취락지구 개발기준’ 등 관련 법규를 고쳐 2001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준농림지역 시·군의 경우 인구가 10만명 미만일 경우는 10층 이하로, 인구가 10만명 이상일 경우 15층 이하로 아파트 층수를 제한하되 용인처럼 이미 주변지역이 개발돼 경관에 지장이 없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층수를 정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러브호텔 등 위락 및 숙박시설 설치허용 지역을 미리 도면에 표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해 시정자문위원회 등의 형식적 심사를 통한 ‘변칙허용’을 막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골프장, 콘도미니엄, 묘지 등 시설용지는 보전임지가 50% 이상 포함된 지역의 경우 시·군 발전계획에 반영돼 있거나 개발이 크게 낙후되어 지역주민이 입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함(한국일보, 2001. 5. 29).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건설교통부는 ①앞으로 100만㎡(3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사전에 광역교통시설 처리대책과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지구지정 하도록 하여 공공택지개발시 서울 등으로 향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적인 택지개발 방안을 사전에 확보토록 함. ②주택시장 여건에 뒤떨어진 현행 공공택지 개발제도를 고치기 위해 우선, 택지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1년전’에 토지를 소유한 주택업체에게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을 주택업체가 토지매입을 위해 '1차 중도금만 납부'하면 그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③주택조합도 공람공고일 현재 총소요택지의 1/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④ 택지지구에 우량농지가 포함된 경우에 이들을 한곳에 모아 대체농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확보와 택지조성의 효과를 함께 거둘수 있게 하고, ⑤지금까지는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택지 개발사업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체토지 중 30% 이상을 확보한 경우로 제한하며, ⑥민간의 중소형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시의 중소형 주택용지를 현재 50%에서 60%로 확대함. ⑦대규모 택지지구내 일자리 확충을 위해 현재까지 4%까지 허용되던 벤처·도시형공장 등 자족기능 용지 비율을 100만평 미만은 10%까지, 100만평 이상은 20%까지 확대하기로 함(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거환경과 입법예고안).

◎ 피난계단 출입문 구조 관련법 개정의견

- 서울시는 피난장소까지 곧바로 이어지는 피난용 계단이 평상시 통로 및 물건 보관 장소로 활용돼 화재발생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다중이용 고층건축물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피난전용 계단의 출입문 구조가 계단쪽에서 건물내부로 들어갈 수 없는 형태로 바꾸도록 하고 관련 법규를 개정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함. 시가 마련한 건의안은 11층 이상, 지하 3층 이하(판매·영업시설 5층 이상, 지하 2층 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출입문을 계단쪽으로만 열리게 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는 통행이 차단되도록 하고 있음(한겨레, 2001. 5. 28).

◎ 하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대규모 호우에는 기존과 같이 하천제방위주의 치수계획만으로는 홍수방어가 어려워 홍수방어계획을 하천유역에 골고루

분담시키기 위하여 유역별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금년부터 한강, 낙동강, 금강등 전국 13개 하천에 대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서 이를 위한 유역조사에는 유역면적등 기본현황조사, 하천수위등 수문조사, 용수이용현황등 이수조사, 홍수피해등 치수조사, 유역의 오염원현황등 환경조사등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그 수립권한을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그간 하천에서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 카누등 수상레저기구를 무분별하게 운항함에 따라 하천유수소통에 지장을 주고 하천환경을 오염시키는 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여 수상레저사업등록을 한 자가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개인이 취미생활을 위해 수상스키등 수상레저기구를 일시적으로 운항하는 경우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여 개인의 여가선용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함. 또한, 지금까지는 하천에 가스관, 송유관등 관로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해당토지가격의 2.5%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하여 대한송유관공사가 송유관을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한국가스공사가 가스관을 설치하는 경우는 ‘도로법’, ‘공유수면관리법’과 같이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함(건설교통부 수자원국 하천계획과 보도자료).

◎ 항공기운항안전법 개정의견

- 외국에선 비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 가능토록 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1974년 제정된 법안을 아직까지 유지해오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함. 이에 따르면 지정된 기내의 흡연장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폭언등 소란을 피울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지연출발, 결항등을 이유로 항공기를 접거하거나 농성을 해도 벌금 처벌을 받게 함. 대신 승객과 항공사 사이에 일어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항공기 운항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승객피해를 처리하기로 함(조한천 민주당 의원, 매일경제, 한국일보, 2001. 5. 23).

◎ 항공법 개정의견

-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는 국내항공 요금 인상과 관련 국내선 항공요금 책정제도 개선등에 의견을 모으고 '항공법'을 개정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함(조선일보, 2001. 5. 20).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건설교통부는 6인승 밴형자동차가 그동안 화물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있어 택시영업이 자행되어왔다고 보고 택시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입법예고함. 이번 법개정을 통해 화물실의 바닥면적이 승객실의 바닥면적보다 넓은 밴형화물자동차만 화물운송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한함(한국경제, 2001. 5. 28).

◎ IT(정보기술)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국내 정보화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뒤떨어지지 않지만 IT기술력이 낮은 데 따른 핵심IT부품의 해외의존도 심화, 기술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IT산업을 관장할 법체계가 미비한 바, IT(정보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IT기본법(가칭)’제정을 추진하기로 함. ‘IT기본법(가칭)’에는 대통령 직속의 IT산업자문회의 구성과 IT전략본부 설치, IT전문대학 설립, IT투자회사 설립, IT진흥구역 조성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IT자문회의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와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IT산업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IT전략본부는 IT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정부의 기술개발사업을 관리·평가하게 되고, 또 IT전문대학은 IT산업 발전을 위한 고급 인력 양성을, IT투자회사는 IT기업의 자금난 해소 기능을 각각 담당하게 될 예정임. 이와 함께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 조성되는 IT 진흥지역은 입주기업들에 기반시설 제공, 조세감면,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우대 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IT전문기업 육성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예정임(정보통신부, 경향신문, 2001. 3. 28).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관련 입법의견

- 정보통신부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을 보낼 경우 제목란에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시행령’을 마련하여 2001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영리 목적의 이메일을 보낼 경우,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광고’라는 문구와 이메일 본문의 주요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또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쉽게 밝힐 수 있도록, 전송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기로 함. 이는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정보통신부는 스팸메일 방지를 위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 등에

대한 행정 지도를 통해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피
해보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함(조선일보, 2001. 4. 24).

-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해 전자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것과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정보통신부 장관 고시로 넘긴
조항을 삭제해야 함. 전자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은 이전의 내용 선
별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과 크
게 다르지 않은 것임(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성명서, 2000. 5. 9).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본법에 명시된 시행령에 규정될 필요가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 역분석 관
련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인터넷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 차단 △
정품소프트웨어 사용기관 지정제도 △통일적 등록표시제도 등을 신설함
(정보통신부, 전자신문, 2001. 5. 18).

환경

◎ 다이옥신규제관련 입법의견

- 환경부는 2001년 5월 23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122개국 정부대표와 6개 유엔기구, 80여개 민간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POPs(잔류성유해화학물질)관리를 국제법규화하는 스톡홀름 협약을 채택할 예정이다. 협약은 서명 후 90일이 경과되면 발효되며, 앞으로 어떤 강제규정을 가질지 각국이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임. 이는 12개 유해물질에 대한 금지, 제한 또는 배출저감 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을 완전금지하지 않는 다이옥신이나 퓨란 등의 배출이 문제가 될 것인 바, 앞으로 다이옥신이나 퓨란 등 POPs를 발생시키는 국내 업체들은 이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함(경향신문, 2001. 5. 22).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의견

- 환경부는 앞으로 톨루엔이나 벤젠 등으로 불법휘발유를 만들어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하고 터미널이나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불필요하게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에도 과태료 등을 물게 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기로 함. 개정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연료 이외의 불법휘발유를 제조, 공급, 판매,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제조, 공급, 판매자는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낭비와 오염물질 배출을 막기 위해 터미널이나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일정시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시, 도지사가 이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였음. 이와 함께 △자동차 중간검사 실시에 따른 보완제도도 마련하여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중복되는 경우 중간검사로 정기검사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수료 징수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이행명령, 정밀검사기관 부정행위 금지에 대한 근거규정 등도 마련했고, △저

황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할 경우 별도로 받아야 했던 승인제도를 폐지했으며 △시·도지사는 국가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이외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조례를 통해 지역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경향신문, 2001. 5. 10).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규제개혁위는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50개 항목 가운데 납, 비소 등 33개 항목에 대해 기준위반시 곧바로 영업정지처분하던 것을 1차에 한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수질기준 위반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대상에 대장균군과 불소를 추가해 17개로 확대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이라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해 오는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는 국민건강을 우선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관련업체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규제개혁위는 영세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으로 받는 부담을 완화하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등과의 형평성도 고려하는 차원에서 환경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행정처분 절차를 개선한 것이며, 수질기준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그 범위에서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므로 수질기준 위반의 고의성이 있거나 질이 나쁘면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입장을 표명함(경향신문, 한국일보, 2001. 4. 23).

◎ 야생동식물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관련법을 통합해 ‘야생동식물보호법(가칭)’을 제정하고, 처벌 내용도 대폭 강화하기로 함. 이 개정안은 기존 법이 야생동물 가공품의 유통 및 거래자에 대한 처벌만 규정해 처벌 범위가 모호했던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사먹은 사람도 처벌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밀렵동물 수요를 차단하기로 하고, 앞으로 야생동물을 사먹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하

였으며,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되면 이익금의 최고 10배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하고, 법정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개구리와 뱀 등 양서 및 파충류에 대해서도 ‘포획 허가제’를 도입, 시장·군수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며, 뱀그물 등을 이용한 싹쓸이 사냥을 원천 금지하고 이와 함께 보호종인 야생동물 때문에 민가가 피해를 볼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기로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음(조선일보, 2001. 6. 6).

◎ 울릉도자연자원보존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울릉군과 지역주민은 나리분지 일대 원시림을 비롯, 해안 일대의 주상절리 등 보호가치가 큰 자연경관과 천연기념물의 보존을 위한 ‘울릉도자연자원보존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을 주장함. 이 법의 골자는 도로·항만 등 개발에 소요되는 석재 등을 육지에서 반입하여 울릉도의 천연자원 훼손을 방지하자는 것으로 그 비용은 전액 국가 부담으로 함(경향신문, 2001. 4. 7).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개정의견

- 환경부는 레저용 사격 및 수렵 등에 사용되는 납탄알이 산과 들에 흩어지면서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조류의 납중독까지 유발함에 따라 오는 2003년부터 납탄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계획임. 환경부는 앞으로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2003년부터 클레이사격장, 2004년부터 고정수렵장, 2005년부터는 모든 수렵 및 클레이사격장에 대한 납탄알의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며, 납탄알 사용금지 이전이라도 납탄알을 텅스텐합금 등 비독성 탄알로 대체하도록 제도하는 한편 2001년 5월부터 전국의 고정수렵장에 대한 납오염 실태를 정밀 조사하기로 함(한국일보, 2001. 4. 30).

보건·복지

◎ 건강보험급여관련 법규 개정의견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 낭비를 막기 위해 심한 치주질환의 단계적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만 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하고, 1998년 이후 보험 급여를 해오던 단순 스케일링에 대해 다시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정을 개정할 방침임.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는 스케일링 치료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한해 400억~5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법개정은 치과의사협회가 최근 스케일링 관련 급여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해오며 따라 정해진 방침임(조선일보, 2001. 5. 8).

◎ 건강보험재정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당정은 건강보험 재정위기 타개책으로 보험료 인상을 가급적 지양하는 대신 현재 30%선인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이를 위해 '건강보험재정특별법안'을 마련해 2001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추진하되 △매년 재정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했던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율을 50%로 법에 명문화할 방침임. △보험재정 악화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소액진료(진료비 1만5천원 이하) 정액부담제를 정률부담제(30%)로 바꾸거나 △현행 의원 2천200원과 약국 1천원 등 3천200원의 환자 본인 정액부담액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의사의 경우 하루 환자 80명이 넘을 경우 초과 환자수에 대한 진료비를 차등적으로 삭감하는 등 의·약사 모두에 대해 차등수가제를 적용함으로써 재정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고 △의사측에서 요구중인 모든 주사제의 의약분업제외를 수용하되 △약사측이 요구하는 약품성분명 처방은 20년이상 시판 등을 통해 약효와 안정성이 인정된 고가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며, △만성질환을 앓고있는 노인들의 요양비용을 충당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제도와 별도로 노인요양보험을 만드는 방안도 중장기과제로 추진할 방침임(경향신문, 2001. 5. 28).

◎ 공중화장실법(가칭) 제정의견

- 현재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 32개 법규에 산재해 있어 감독관청이 불분명하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인 바, 이의 개선을 위하여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중화장실의 설치, 이용, 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공중화장실법(가칭)’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 화장실 문화 개선 및 국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공중화장실법(가칭)’ 제정을 화장실이 인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함에도 관련 법규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실 관련 조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화장실 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해야함(이현식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공중화장실을 적정한 곳에 설치되도록 하고 시설의 유지 및 관리가 제대로 되게 하려면 관련 법률이 있어야 하는 바, 국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화장실법 제정은 꼭 필요함(표혜령 화장실문화시민연대 사무국장).
- 제정안은 공중화장실의 남녀 변기설치비율을 최소 1대3 이상으로 하고, 다중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곳의 개인화장실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건물주 등과 협의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공중화장실에 낙서를 하거나 무단으로 광고물 등을 부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공중화장실에서 사용료를 받으면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경향신문, 2001. 3. 23; 조선일보, 한국일보, 2001. 5. 7).

◎ 국민건강증진법 등 개정의견

-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2001년 하반기부터 금연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앙정부청사, 유치원과 초·중·고교, PC방 등 청소년이용시설,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 등을 ‘절대 금연시설’로 지정하며, 경찰 이외의 일반 공무원도 금연시설내 흡연행위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연운동 확산 대책을 마련한 후 본격적으로 관련 법개정에 착수할 방침임. 또한 현재 담배 1갑당 2원씩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갑당 10원으로인상, 연간 5백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뒤 금연운동 등 국민보건증진 사업에 투입할 계획임(경향신문, 조선일보, 2001. 4. 25).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여성부는 남녀차별의 내용을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로 세분하고 2001년 중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법망을 피해 가는 교묘한 남녀차별인 ‘간접 차별’의 의미와 금지를 선언적으로 명시할 방침임.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법, 제도의 보완은 상당히 진척된 상태이며 요즘의 남녀차별 대부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간접 차별이어서 남녀차별금지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시키기로 함. 간접 차별이란 사회에서 어느 한 성(性)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남녀차별을 초래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직장에서 교육, 연수를 일과 후에 실시해 퇴근 후 가사노동으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여직원이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면접시험에서 여성 응시자에게 직장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남성 위주의 근무여건을 지나치게 강조해 부적격자로 몰아가는 수법 등이 이에 해당함(경향신문, 2001. 3. 29; 한국일보, 2001. 4. 19).

◎ 노령화사회 대비 입법의견

- 노인부양 가족 소득공제와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확대, 전문간병인 자격증제 도입과 함께 노인인력 정보네트워크 구축 등이 정책과제로 검토됨. 이와 함께 노령사회 대비책으로 정례적인 노인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인구센서스에 노인관련 항목 추가를 추진하며, 양로시설의 기능보강과 요양시설로의 전환, 병원내 재가보호서비스 병설 유도 등을 통해 노인복지 공간을 확충키로 하고, 또 노령층 노동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50세 이상 기준고용율을 상향조정하고 재고용과 근무연장제 실시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임. 특히 총리실에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노인보건·복지대책위’를 두고 노령사회 대비를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 추진할 예정임(보건복지부, 경향신문, 2001. 4. 6).

◎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생명윤리기본법시안’의 규제가 과도해 생명공학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 우려되는 바 인간배아 복제의 허용 등 융통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시안이 생명윤리의 지나친 강조로 생명과학산업 종사자들의 자율적 판단과 투명한 제도적 확립을 무시한 채 생명과학산업에 대한 규제일변도로 흐르고 있고, 특히 불임치료 목적 이외의 인간배아복제를 전면금지함으로써 생명공학기술을 사장시킬 우려가 있으며, 인간배아 및 간세포의 연구 금지는 미래의학의 핵심부분이 될 세포치료법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이 치료목적의 배아복제 연구를 사실상 허용함으로써 동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암 등 난치병 치료에서 선진국의 기술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 △인간배아 및 간세포에 대한 연구 및 유해한 유전자 파악과 기능 차단을 위한 동물유전자 변형연구를 전면 허용하고 △종간 교잡행위 중 인간의 체세포를 핵이 제거된 동물의 난자에 이식하는 행위 등은 허용하며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인문·사회계 학자와 생명공학 전문과학자·산업계 관련자를 동수로 구성해 전문적인 지식에 기초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위원회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자문성격의 기구로 함(전국경제인연합회 생명과학산업위원회, 한국생물산업협회, 생명공학연구조합 공동,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에 대한 긴급건의』, 조선일보, 2001. 5. 18; 전자신문, 2001. 5. 25; 경향신문, 2001. 5. 27).

◎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체계의 개선

- 성폭력에 대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있으나 실제 피해자들은 증거물 채취, 임신예방 처치, 피해사실 신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등의 의료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국·공립 병원내 성폭력위기센터 설치와 △민간병원의 성폭력위기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김중권 민주당 대표, 경향신문, 2001. 5. 21).

◎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관련 의견

-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음식점원산지표시제를 ‘소비자보호법’ 등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2000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통과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당시 국산과 수입육을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것으로, 농업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국산과 수입육을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을 곧 개발완료할 것인 바, 이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이와 함께 ‘국가는 소비자의 물품의 사용이나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해 선택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할 경우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법’ 제8조에 근거해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처벌규정을 소비자보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정할 방침임(농림수산부, 경향신문, 2001. 3. 25).

◎ 의료법등 개정의견

-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및 ‘약사법’을 개정하여 부당·허위 청구한 의·약·한의사에 대해 3년간 면허를 정지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면허 취소와 함께 10년간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도록 규정함(김성순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 정치권의 ‘의료법’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단체행동권·파업권 등 기본권을 무시한 악법임(의사협회).
: 조선일보, 2001. 5. 17.
- 노령인구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만성질환자들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장기요양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일반병원의 요양병원 전환을 적극 유도할 방침임. 우선 단기 입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급성기 병상을 장기요양시설로 전환하는 병원들을 금융, 세제상으로 지원하고, 일반병원과 구분해 일당제 등 별도 수가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며, 병상수 총량제를 도입, 일반병원의 급성기 병상 증설을 사실상 금지할 방침임. 보건복지부는 2000년 말 현재 ‘의료법’ 규정(요양환자 30인 이상 수용)을 충족하

는 장기요양병원은 전국에 8곳(도시 5곳, 농어촌 3곳)이고 전체 병상수도 707개에 불과한 반면 급성기병상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1.7배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2001년내에 관련 법제를 정비한 뒤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장기요양시설 확충에 나서 오는 2003년까지 현재 10만명당 450개 정도로 추정되는 급성기 병상수를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10만명당 300병상) 근접 수준으로 낮출 계획임(보건복지부 장기요양시설 확충 계획을 건강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 한겨레, 2001. 5. 29).

◎ 장애우차별금지법(가칭) 제정의견

- 장애인에 대한 교육계의 무관심과 인식부재로 장애인 교육권은 담보 상태에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상시운영 △‘특수교육진흥법’내 보조교사 배치규정 신설 △입학거부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애우차별금지법(가칭)’ 제정 등을 촉구함(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경향신문, 2001. 5. 22).

법원 · 법무

◎ 국적법 개정의견

- 2000년 8월 헌법재판소가 모계특례 국적취득 대상자의 범위를 법 시행 이전 10년 동안 출생한 사람으로 제한한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이르면 2001년 말부터 1978년 이후 출생자들은 부모 중 한 쪽만 한국인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함(법무부, 중앙일보, 2001. 5. 21).

◎ 돈세탁방지법관련 입법의견

- 민주당은 여야간에 합의된 ‘돈세탁방지법(가칭)’에 대해 시민단체 등의 반론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연결계좌 추적권 강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로 함. FIU가 혐의거래 당해계좌에 대해서는 영장없이 추적할 수 있게 하되, 무차별 계좌추적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연결계좌와 모계좌 추적은 검찰에 영장을 요청, 추적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불법 정치자금 연결계좌와 모계좌 추적시 검찰에 영장청구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경우 선관위 통보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하며 형평성 원칙에 따라 불법 세무자금의 국세청 통보조항도 삭제하도록 함(이상수 민주당 총무, 경향신문, 2001. 4. 25).

◎ 민법 개정의견

- 재혼여성 16만명과 그 자녀들이 겪는 고통을 인권문제로 보고 재혼한 여성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성을 새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親養子)’ 조항을 민법개정 때 우선 관철하기로 함. 친양자 조항을 담은 민법개정안이 국회에서 3년째 계류 중인 것은 정치권의 잘못이며 논란이 많은 동성동본금혼 등에 앞서 친양자 조항을 반영한 개정안부터 2001년내에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할 예정임(김만제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중앙일보, 2001. 5. 22).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2000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 입법되기는 했으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비상임 위원이 2주에 한번 회의를 열어 8,000여건을 심사하는 무리한 집행이 계속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액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등 시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할 예정임. 개정안에서는 위원회를 상설화하는 한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보상규정을 개정하고 또 현행법에 관련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명예회복 절차도 법개정을 통해 신설할 예정임(김광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지원단장, 경향신문, 2001. 3. 26).

◎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 개정안

- 변호사의 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내용의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개정안’을 마련, 2001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임. 협회측은 기존 규정은 변호사의 서비스 및 가격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해왔다는 비판이 많았고, 새 규정이 마련되면 일반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늘어나며,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주장하고 있음. 개정안은 광고내용을 변호사 이름과 경력, 자격증, 전문 업무 등으로 한정했던 기존 규정(3조)을 삭제하는 대신 허위, 과장 내용, 승소율, 석방률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기로 하고, 연간 총 수입의 3% 또는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던 광고비 총액범위 규정과 신문, 잡지 광고의 경우 100cm²이내로 제한했던 광고크기 기준(6조)도 완전 폐지기로 함. 그러나 옥외 간판광고는 1m²이내 규격으로 제한하기로 함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일보, 2001. 3. 25).

◎ 부동산 신탁사의 금전신탁 허용관련 입법의견

- 수익 기반의 붕괴로 고사 직전인 부동산신탁사들의 회생을 위해 이들 회사에 ‘금전 신탁’을 허용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현재 부동산신탁사들은 직접자금조달 수단이 없어 단기 차입금에 의존하면서 자금 조

달·운용의 만기가 불일치하고, 한 프로젝트의 부실이 신탁사 전체 부실로 이어지는 취약한 구조에 시달리고 있는 바, 직접 금융이 가능한 ‘금전신탁’을 허용하도록 법령 개정의 필요가 있음(김민석 민주당의원, 조선일보, 2001. 4. 8).

◎ 부패방지법(가칭) 제정의견

- 여야가 공직자윤리규정을 ‘부패방지법(가칭)’에 넣을 경우 공무원을 부패 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직자윤리규정을 넣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세계 모든 나라에서 부패방지법은 사실상 공직자윤리규정을 정한 법안을 의미하는 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중인 부패방지법안에 공직자윤리규정이 포함되어야 함. 공직자윤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강령이 아닌 법제화하는 동시에 내부 비리신고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야 함(경향신문, 2001. 4. 19).

◎ 사법보좌관제도 도입관련 의견

- 사법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 법관은 쟁송에 관한 업무에만 집중함으로써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9년 대법원에 의해 제정시안이 마련됐으나 변호사단체의 반발 등 논란 속에 입법이 미뤄져온 ‘사법보좌관법(가칭)’의 최종안을 최근 확정하여 판사 업무중 경미하거나 공중적 성격을 지닌 사법업무를 법원 일반직원에게 위임하는 ‘사법보좌관제도’를 빠르면 2001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함. 제정안에 따르면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3년이상 근무하거나, 법원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1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중에서 선발위원회가 선발하며, 법원행정처에서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음. 사법보좌관 업무는 기존 판사업무중 △소송, 집행 비용확정 △담보취소, 담보물반환 △화해, 독촉, 공시, 최고절차 △집행문부여, 압류물인도, 특별환매 등의 명령 △재산권 강제집행, 배당, 부동산 강제경매절차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제소명령 등이나 이들 업무중 사회적 주목의 대상이 되거나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고 이해관계인의 다툼이 있는 경우는 사건을 즉시 판사

- 에게 송부,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법무부, 경향신문, 2001. 4. 2).
- 사법보좌관제도가 신설된다고 해서 법관의 업무가 현저히 경감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일반직에게 준(準)법관의 지위를 부여해 처우를 개선하려다가 잘못하면 사법의 정체성 상실을 초래할 것임. 새 민사재판 모델(원고와 피고가 서류공방을 계속한 뒤 양측이 원칙적으로 두차례만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해야 함. 이와 함께 효율적이고 평등한 형사재판을 위해 법정에서 변호사와 피고인이 검사와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함(대한변호사협회, 동아일보, 2001. 5. 14).

◎ 사법시험법시행령 개정의견

- 법무부는 2001년 3월 11일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자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사법시험법시행령개정안’을 확정하여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함. 확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헌법·민법·형법 등 3개 과목은 현재처럼 필수과목으로 유지하면서 2002년부터 수험생들은 현재 선택과목인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국제경제법 포함), 노동법(사회보장법 포함),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등 8개 중 1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2004년부터는 어학시험 내용을 변경하여 먼저 영어시험을 총점에 포함시키지 않고 토플(5백30점 이상)·토익(7백점 이상)·토텍스(6백25점 이상)등의 점수를 제출하면 되는 자격시험으로 대체하며, 지금까지 영어를 제외한 6개 언어 가운데 1개를 선택하던 제2외국어 시험은 폐지하고, 2006년부터는 일반대학교 전문대·방송통신대·사내대학·사이버대학 등 법률로 정한 평생교육기관에서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할 예정임. 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네차례) 규정은 기본권 제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시행령에서 삭제되었음(중앙일보 2001. 3. 12).

◎ 소극적 안락사 합법화 논란

- 네덜란드 의회가 최근 세계 최초로 안락사 합법화를 최종 승인하였고 이를 계기로 안락사 합법화 문제가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음. 학계·

의료계·종교계 등에서는 그동안 암묵적으로 시술되어 왔던 안락사는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주고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므로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됐다는 찬성의견과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없는 데다 생명경시 풍조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음.

<찬 성>

- 안락사의 법제화를 통하여 안락사의 시술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그 시술에 관련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며, 아울러 안락사라는 실존적 결단의 상황 속에 놓인 사람들의 법적 불안정을 제거해줄 필요가 있음. 이는 중환자용 의료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의료체계의 요청과 환자 개인에게 무한대의 의료를 베풀어야 한다는 직업윤리적 요청사이에서 고민하는 의사들에게 법적인 측면에서 좀 더 안정된 진료환경을 마련하는 것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 인 바, ① 안락사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다양한 이익들간의 충돌이나 인생관 또는 세계관의 대립 그 자체에 대하여 법이 어떤 실제적인 선택기준을 제시하려 들지 말고, 단지 당사자들이 모든 의학적, 윤리적 관점을 충분히 심사숙고한 후에 안락사라는 실존적 결단을 내리도록 유도함. 이를 위해 법은 다원적인 상담과 대화의 의무를 부과하는 절차를 규율해야 함. ② 안락사의 법제화는 소극적 안락사와 이웃해있는 문제들과는 구별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불확실하고 희미하나마 생존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 환자에 대해 치료비 부족을 이유로 치료를 중단한다든지, 소생시에 중증 장애인이 되는 것을 염려하여 심폐소생술의 거부 의사를 미리 표시해둔 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기형아인 미숙아에 대해 인큐베이터에 의한 보호를 거두어 들인다든지 하는 문제들은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소극적 안락사의 울타리 밖에 놓여있으나 임상의 현상에서는 소극적 안락사와 결코 구별하기 어려운 것인 바, 안락사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기획에는 이 문제들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 포함되어야 함(이상돈 고려대 법대 교수).

<반 대>

- 안락사 결정에 참여하는 3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의사, 환자와 그 가족들 중 그 어느 누구도 경제제일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속에서 장기 이식 등과 연관된 안락사의 오용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사회문화적, 법과 의료 제도적 담보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안락사 합법화의 추구는 결국 우리 사회에 이미 만연하고 있는 생명경시풍조를 악화시키는 데에 치명적인 역할을 할 것임(임성빈 장로회 신학대 교수).
: 조선일보, 2001. 4. 12; 경향신문, 2001. 4. 20.

◎ 인간복제금지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인간 개체의 복제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신성한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인간 유전자의 조작도 하나님 창조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만큼 배아 복제 및 실험을 즉각 중단해야 함(이창영 천주교 주교회의 사무총장, 맹용길 장신대 교수, 경향신문, 조선일보, 2001. 5. 23).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의견

- 지난 2000년에 입법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관련자가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처벌조항이 없는 데다 최종 심의가 끝나 위법사항이 드러난 관련자를 고발토록 하고는 있지만 정작 공소를 유지할 주체가 없는 등 입법 미비사항이 많아 법 개정이 불가피하고 조사기간이 6개월로 너무 짧아 이를 늘리는 쪽으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함(황인성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경향신문, 2001. 3. 26).
-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1년 임시국회에서 위원회의 활동기한을 3~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중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한이 진정사건 조사 및 처리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부족한 만큼 의원입법으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을 개정키로 했고 여야 정치권도 적극적 태도로 임하고 있음(김형태 변호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조사기간 연장은 물론 △조사 출석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직접 부과 △거짓 증언자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하도록 위원회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며, 특히 반인륜범죄 처벌에 관한 국제조약을 원용해 공소시효가 지난 의문사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법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6개월간(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조사활동을 벌인 뒤 그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총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 수사요청을 하고 재정신청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경향신문, 2001. 6. 5).

◎ 집단소송제관련 입법의견

-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소송남발로 인해 기업경영에 애로가 발생하고, 주가하락으로 투자자들이 결국 손해만 보게되며, △집중투표제의 경우 경영권 갈등으로 인한 기업의 불안정성 증대 등의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전국경제인연합회, 경향신문, 2001. 6. 3; 매일경제, 2001. 6. 1).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과거 일제 치하에서 일본이 저지른 행위를 미화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 국민 감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도록 함. 전범들에 대한 출입국 제한은 지난 1997년 법개정으로 조문화됐으나 종전 후 역사왜곡에 앞장선 이들에 대한 출입국 제한규정은 없는 바, 역사왜곡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역사를 왜곡한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음(김원웅 한나라당의원, 조선일보, 2001. 4. 30; 경향신문, 2001. 5. 29).

◎ 파산법 개정의견

- 2001년 2~3월 계속됐던 임대아파트의 파산시 주민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못받고 임대차보증금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바, 파산절차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 변제하는 소액 임차 보증금 역시 파산절차에서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함(임대

아파트 부도 및 파산주민피해 전국공동대책위, 경향신문, 2001. 4. 3).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단순폭행죄의 경우 형법을 적용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기상청 발표에 따른 일몰시간 후 일출시간 전까지 야간에 발생한 단순폭행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해 형량의 2분의1까지 가중 처벌하고 있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전과자 양산으로 세계 2위의 폭력범죄국이라는 오명을 낳고 있는 바, 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함. 개정안은 피해사실의 경중이나 피해자의 형사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야간에 발생한 단순 폭행사건에 대해 형법상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경향신문, 2001. 5. 28; 조선일보, 2001. 5. 29).

◎ 형사소송법 개정의견

- 경범죄 범칙금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벌과금 등 집행 업무를 비영리 공익법인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법률구조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뒤 벌과금 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벌과금 실적 금액중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 보너스로 책정, 법률구조기금으로 사용토록 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농어민, 영세민 등 서민들의 민·형사 사건 등 법률구조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법률구조공단의 기구를 대폭 확대 개편할 예정임.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맡도록 돼 있는 벌과금 집행 업무의 위탁관련 규정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중임(대검찰청, 한국일보, 2001. 3. 19).

◎ 형사소송법·검찰압수물사무규칙·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개정의견

-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사전에 현금화해 가치를 보전하고 현금화할 수 없는 물품은 사전에 폐기하며 범죄에 이용된 주식, 채권, 예금

등은 지급 정지 의뢰할 수 있게 함. 이와 함께 가짜 석유류 및 농축산물 등 유통·판매가 금지되어 대가(현금화 등) 보관이 불가능한 압수물은 사전에 폐기하고 몰수 대상 압수물에 대한 현금화 보관 범위를 확대해 나가며 환부 대상 압수물도 가치 보전을 위해 현금화하기로 하고, 금융 피라미드 사건 등의 경우 주식 등 유가증권과 예금·적금 인출을 사전에 봉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공시 대상인 자동차나 선박 등에 대해 압수 기간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관청에 압수 사실을 미리 통지키로 하며, 환부 대상 압수물은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소유자에게 돌려주고, 환부 통지를 의무화하며, 자동차나 선박, 중공업기계 등 공매가 불가능할 경우 폐기하거나 소유권포기 압수물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이 재발급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면 즉각 폐기하도록 함(대검찰청, 한겨레, 2001. 5. 21).